

# 持株會社制度와 租稅政策方向

金 珍 洙 · 1999. 12



## 序 言

지주회사제도는 경영전략상 유용한 수단으로서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해 줌으로써 지주회사는 경영전략, 연구개발, 재무관리, 인사업무 등의 공유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각 사업부문이 독립기업이 되어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각 사업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말의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었다. 당시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와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재벌조직 형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소그룹지주회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허용으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재벌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조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룹 회장의 법적 지위와 계열시간 조정기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 대신 계열수단의 확장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말고도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지주회사의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 설립 이후 발생

하는 문제는 199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지만,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와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하여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주회사의 경제적 기능 및 지주회사 관련 정책의 변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의 타법인 주식보유 현황, 대기업집단의 상호지분보유 현황, 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액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검토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과세문제의 해결방안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金珍洙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익명의 논평자 두 분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원고정리에 수고한 金正紘, 沈在珍, 申基銜 주임연구원과 張貞順 연구조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본 보고서의 교정을 맡아준 출판과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一鎬

# 目 次

I. 序 論 .....	9
II. 持株會社의 經濟的 機能 .....	11
1. 持株會社의 定義 .....	11
2. 持株會社의 設立形態 .....	12
3. 持株會社의 否定的 效果 .....	15
4. 持株會社의 肯定的 效果 .....	18
III. 持株會社 關聯 政策의 變化 內容과 特徵 .....	23
1. 經濟力集中의 抑制와 持株會社의 禁止 .....	23
2. 持株會社의 許容過程 .....	24
IV. 우리나라 法人의 株式分布 및 配當支給 現況 .....	36
1. 他法人 株式保有 現況 .....	36
2. 大企業集團의 相互持分保有 現況 .....	39
3. 上場企業의 配當金 支給 現況 .....	42
V. 持株會社制度의 導入과 관련한 課稅問題 .....	45
1. 持株會社 設立時의 課稅問題 .....	45
2. 持株會社 設立 以後의 課稅問題 .....	49
VI.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調整方案 .....	54
1. 主要國의 法人間 配當에 대한 課稅制度 .....	54

2. 二重課稅 調整方案의 檢討 .....	69
<b>Ⅶ. 連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 .....</b>	<b>77</b>
1. 主要國의 連結納稅制度 .....	77
2. 連結納稅制度 導入의 妥當性 檢討 .....	102
<b>Ⅷ. 要約 및 結論 .....</b>	<b>117</b>
<b>〈參考文獻〉 .....</b>	<b>122</b>
<b>〈附錄〉 日本의 持株會社制度 .....</b>	<b>125</b>

## 表 目 次

〈表 IV-1〉 우리나라 상장회사 株式所有 分布 .....	37
〈表 IV-2〉 外國人 株式投資限度 變動推移 .....	38
〈表 IV-3〉 大株主 1人 持分率 變動推移 .....	39
〈表 IV-4〉 30代 企業集團의 內部持分率 變動推移 .....	40
〈表 IV-5〉 大企業集團別 內部持分率 變動推移 .....	41
〈表 IV-6〉 30代 企業集團의 企業公開 現況 .....	42
〈表 IV-7〉 上場法人 配當 現況 .....	44
〈表 VI-1〉 英國의 法人稅 計算例 .....	61
〈表 VI-2〉 獨逸의 法人稅 計算例 .....	65
〈表 VI-3〉 主要國의 配當所得 關聯 稅制 .....	68
〈表 VII-1〉 主要國의 企業集團 課稅制度의 比較 .....	99
〈表 VII-2〉 連結財務諸表와 連結納稅制度의 主要 差異點 .....	103
〈表 VII-3〉 主要國의 지주比率 .....	110

## 圖 目 次

[圖 II-1] 分社型 .....	13
[圖 II-2] 統合型 .....	14
[圖 II-3] 中間型 .....	15

## I. 序 論

일본이 1997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반세기만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해 줌으로써 지주회사의 경영자가 장기적 경영전략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존의 사업을 효율화하고 조직구조의 개혁을 촉진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위험분산 기능으로 인해 벤처사업을 촉진시키고,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완화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조실 등이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들을 실제 지주회사화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는 합법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주회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주회사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여 최근까지 이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와 IBRD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다. 정부는 재벌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경제력집중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더 큰 활력을 주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 그렇다고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은 아니고 계열수단의 확장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하였다. 즉,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 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이다. 자회사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며 자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모회사가 배당을 받으면 그 수취배당금은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또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둘째,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문제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세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 과세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18개국에 도입될 정도로 국제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지주회사의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지주회사 관련 정책의 변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의 타법인! 주식보유 현황, 대기업 집단의 상호지분보유 현황, 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액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제5장에서는 지주회사의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이중과세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 제7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 II. 持株會社の 經濟的 機能

### 1. 持株會社の 定義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함)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여기서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는 자회사라고 한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지주회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2). 또한 1998년 말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2에서는 지주회사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sup>1)</sup>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주회사의 설립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즉,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그 자신이 다른 본업을 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

---

1)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을 말한다.

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나눌 수 있다.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는 다른 본업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고,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는 스스로 생산·판매 등의 고유사업을 하면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그동안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만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사업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대상이 아니었으며, 순수지주회사만이 금지대상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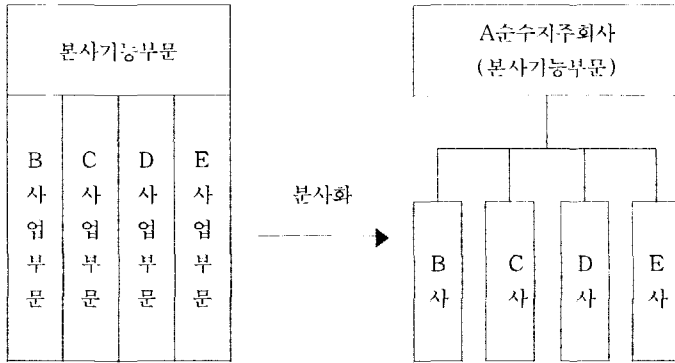
## 2. 持株會社의 設立形態

지주회사의 설립형태는 기존의 사업회사가 사업부문을 독립시키고 자신은 순수지주회사가 되는 분사형, 기존의 사업회사들이 상부에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은 그 자회사로 전환하는 통합형, 그리고 사업회사 산하에 사업부와 지주회사를 두고 다시 지주회사가 복수의 사업회사를 거느리는 중간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 분사형

분사형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각 사업부문을 분사화해서 여러 개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자신은 순수지주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각 사업부문의 분사화는 기업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순수지주회사의 활용은 현존하는 기업그룹의 내적인 기업조직의 변경이므로 이와 같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圖 II - 1] 分社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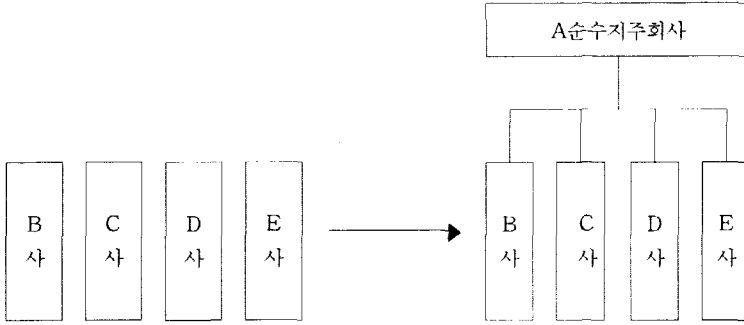


### 나. 통합형

통합형은 여러 개의 기존의 사업회사가 상층에 지주회사를 두고 기존의 회사들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먼저 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즉,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들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하여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사업회사의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지배권을 장악할 수 없으며, 또한 지주회사가 공개매수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먼저 자회사부터 설립하는 방법이다. 사업회사들이 각각 자신의 영업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주식만 가진 이들 지주회사들이 합병을 하여 하나의 지주회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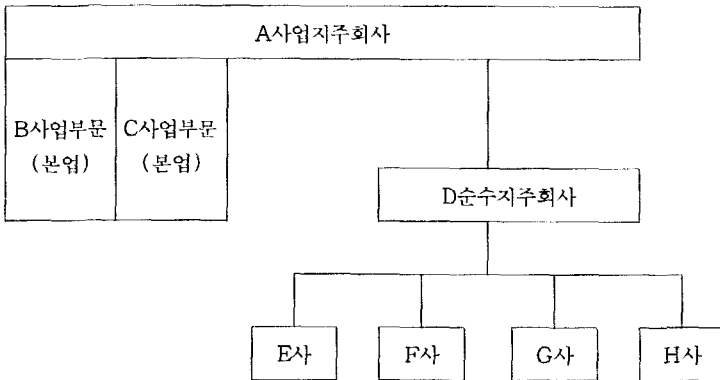
[圖 II-2] 統合型



#### 다. 중간형

기존의 사업회사가 산하에 일부 사업부를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지주회사가 복수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가 아니고 사업지주회사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업회사가 신규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만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둘째, 기존의 사업회사가 국내 영업에만 전념하고 해외영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지역의 사업부문만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圖 II -3] 中間型



### 3. 持株會社の 否定的 效果

1980년대에 들어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들이 자기자본의 뒷받침 없이 부채로써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함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자원의 독점, 분배의 왜곡, 경쟁제한적 행위의 증대 등을 야기하였으며,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규제와 함께 지주회사의 금지라는 제도적 도구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지주회사의 부정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경제력집중의 심화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피라미드식의 기업계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계열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는 자금을 동원하기 쉽고 그 만큼 그 자금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이를 지배하며 자회사는 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이를 지배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피라미드식의 기업계열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즉, 개별 기업집단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 지배주주는 최소의 출자로도 지주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반면 경영에 대한 책임은 자기의 출자분에만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일반집중 이외에도 특정 자연인과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유집중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배대주주는 지주회사만 상속하게 되면 계열사는 그대로 따라 가기 때문에 세습이 용이해져서 재벌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면 그 폐해는 매우 크다.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력이 거꾸로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훼손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경제력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면 이들의 영향력이 정치과정에까지 미치게 되어 민주정치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

## 나. 경영권의 남용

다수 기업의 지배권을 하나의 지주회사에 맡길 경우 지주회사가 공개법인이라 할지라도 대주주가 당해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독점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영권의 남용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지주회

사에 의한 사업회사의 지배는 최고인사권의 장악, 즉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선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지주회사 대주주의 전횡에 의하여 사업회사의 경영진이 약체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경영권감시체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소액주주의 권익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들간에 분식결산을 하는 등 경영권의 남용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은폐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다.

#### 다. 재무구조의 악화 우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자본의 승수적 확장에 의한 피라미드구조가 형성되면 적은 자본으로도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순수지주회사의 허용은 법인출자와 상호 지급보증 등 출자관계를 이용하여 부채조달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비관련다각화를 시도하고 이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는 경우에 조달된 자본이 채산성이 있는 투자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재무구조가 더 취약해질 위험이 있다. 또한 과도한 차입경영은 조그만 외부여건의 변화에도 쉽게 타격을 받는 위험이 있다.

#### 라. 부당한 내부거래의 가능성

지주회사는 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증가시켜 경쟁기업의 거래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그룹에 속하는 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는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그룹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경영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며, 한계기업의 퇴출을 어렵게 하여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국내시장을 보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특히 지주회사의 허용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규모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사실상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인하판매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침식될 수도 있다.

#### 4. 持株會社의 肯定的 效果

지주회사는 신규사업의 전략적 전개, 기존사업의 효율화, 그리고 조직 구조 개혁의 촉진에 있어서 경영전략상 유용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주회사 허용 논리의 핵심이다. 지주회사의 긍정적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

순수지주회사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를 통해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할 수 있지만, 모회사의 경우에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할 수 없다. 반면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기업이 다양한 업종이나 복수의 지역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각 업종이나 사업거점별로 분사화하고 그룹 전체를 통괄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다.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효용을 준다. 순수지주회사는 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판단에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경영전략, 연구개발, 재무관

리, 인사업무 등의 공유업무에 집중하고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본사의 기능을 축소·효율화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은 권한위임에 의하여 경영책임의 명확화가 가능하며 그 평가도 명확하게 되어 각 사업부문의 활성화가 도모된다. 아울러 각 사업부문마다 당해 부문에 정통한 경영자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되며, 각 사업부문이 독립기업이 됨으로써 다른 사업부문과 무조건 평등하게 취급될 필요가 없어지므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조실 등이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를 지주회사화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는 합법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나.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순수지주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 기업이 다양한 업종이나 복수의 지역거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각 업종이나 사업거점별로 분사화하고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둠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다. 즉, 지주회사는 신규사업의 전략적 전개, 기존사업의 효율화, 그리고 조직구조 개혁의 촉진에 있어서 경영전략상 유용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지주회사제도하에서 각 자회사의 경영평가는 자기자본수익률(ROE) 등의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각 사업부문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출자관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자회사의 경영성적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경영은 외형 위주가 아니라 수익성과 현금 유동성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 사업이 없는 지주회사의 수입원은 배당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기업이나 부실기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에 특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순수지주회사는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한 기업결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문화와 노무조건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합병으로는 인사·조직의 일체화가 곤란하여 기업조직의 융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합병에 수반되는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회피하면서도 합병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합병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순수지주회사를 활용함으로써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조직융합도 이룰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사제도나 기업문화가 상이한 기업들이 합병하는 경우 그 당사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매우 클 것이므로 순수지주회사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 다. 위험의 분산

순수지주회사는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특정부문이 부진하게 되면 그로 인한 재무적 어려움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자회사 파산에 따른 재무적 위험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범위를 투자자본 규모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부실하게 되면 계열기업 전체가 부실하게 된다. 반면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출자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험은 해당 자회사에 출자한 자본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위험분산 기능으로 인하여 벤처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 벤처 비즈니스를 본사에 두면서 재무적인 면이나 종업원의 의식면에서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특정 자회사를 지주회사의 벤처 비즈니스 부문을 담당하는 사업회사로 활용함으로써 벤처자본에 의한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라. 원활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

순수지주회사는 원활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각 사업부문 및 전략거점별로 분사화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 종업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이들이 임원으로 등용되기 때문에 사기가 높아지는 등 인사관리가 원활해진다. 사업지주회사 형태에서는 친자회사간에 계층의식 내지 우월의식이 발생하여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순수지주회사 형태에서는 각 사업부문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므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오너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순수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촉진하여 조직의 경직화를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사업부문마다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등을 가장 적정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마. 소비자 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확대

순수지주회사는 소비자 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확대를 촉진한다. 순수지주회사 형태의 활용을 통해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경영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신규사업·신제품의 개발 및 비용의 삭감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에 이익 증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고용기회의 증대 및 근로 조건의 향상이라는 이익을 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바. 국제적 법제도와의 조화

순수지주회사는 국제적 법제도와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국적화하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아시아 국가에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나라 법제도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Ⅲ. 持株會社 關聯 政策의 變化 內容과 特徵

#### 1. 經濟力集中의 抑制와 持株會社의 禁止

##### 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공정거래법은 1980년말에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1986년말의 개정에서 기업의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공정거래법 제14조), 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공정거래법 제12·13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금지(공정거래법 제8조), 상호출자금지(공정거래법 제9조), 출자총액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공정거래법 제11조) 등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이 야기하는 다양한 폐해가 차례로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재벌들은 자기자본의 뒷받침 없이 부채로써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함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고,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자원의 독점, 분배의 왜곡, 경쟁제한적 행위의 증대 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와 지주회사 금지의 두 가지 제도적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규제는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상호출자금지제도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자신의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시행되었다.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 자체도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 나. 지주회사의 금지

개정 전의 공정거래법 제8조에 의해서 지주회사와 관련된 두 가지 행위가 금지되었다. 첫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즉,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주회사의 설립주체는 사업자 또는 회사에 한하지 않으며, 국내법인은 물론 외국법인(외국인)도 포함된다. 둘째,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즉, 국내에서 이미 설립된 사업회사가 타주식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경우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 2. 持株會社の許容過程

### 가. 지주회사의 허용배경

일본이 1997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반세기만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제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지주회사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에서도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ECD와 IBRD에서도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첫째, 현재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진행됨에 따라 향후 경제력 집중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둘째, 재벌그룹의 회장실·비서실 또는 기조실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룹 회장의 법적 지위와 계열사간 조정기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 셋째,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 나. 지주회사 허용에 관한 논의과정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된 과정에서 일본<sup>2)</sup>에서와 같은 장기간의 충분한 토론은 없었지만, 정부와 재계의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이 별로 없이 결정이 몇 번 뒤바뀌다가 제한적인 허용으로 결론이 났다. 지주회사 허용에 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주회사제도 조속 도입 촉구(1997. 8. 7)
- 전경련은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지주회사 도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일본에서는 1967년 지주회사의 해금론이 처음 논의된 후 1997년 지주회사가 해금되기 까지 거의 30여년 동안 정·관·민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 상장회사협의회, 지주회사제도 도입 촉구(1997. 9. 13)
  - 상장협은 기업의 국제화 및 다각화, 기업간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불허(1997. 11. 18)
  - 현재 국내 대기업들이 주력기업을 통해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므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경영감시체제의 보완 등 여건이 바뀌면 지주회사 허용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허용
  - 비대위는 그동안 법적 뒷받침 없이 운영해 오던 대기업그룹의 비서실·기획조정실 등을 제도화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998. 1. 13).
  - 비대위는 결합재무제표가 도입되고 상호지급보증이 해소되는 시점인 1999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다(1998. 2. 3).
  
- 정부, 지주회사 허용 백지화(1998. 2. 6)
  - 공정거래위원회와 비대위는 순수지주회사 설립이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를 2000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OECD, 지주회사 합법화 권고(1998. 3. 2)

- OECD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는 비서실 · 기초실을 없애는 대신 지주회사를 합법화해서 경영상 책임을 분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국인 지주회사 설립 허용(1998. 4. 6)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 · 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지분 10% 이상)에 출자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2000년 이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설립 7월부터 허용(1998. 4. 27)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를 금지해 왔지만 최근 국가적 당면과제로 떠오른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조기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당초 2000년 이후에나 지주회사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1998년 7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의 100% 이내 제한, 이중 지주회사 설립 금지, 자회사 전체 주식의 50% 이상 보유 의무화, 30대그룹의 경우 상호채무보증의 완전해소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만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지주회사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재정경제부, 지주회사 조건 없이 허용 추진(1998. 4. 30)

- 재정경제부는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요건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이에 따른 경제력집중 등의 부

작용은 기존 제도 및 규정의 보완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손회사' 설립 불허 (1998. 5. 3)
  -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회사의 허용은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지주회사 허용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같은 복층구조는 상당기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1998. 6. 2)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되 국내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기존회사가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년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 30대 재벌기업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채무보증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개별업체 기준으로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가 갖지 못하고 자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지도록 하였다.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전경련과 공정위,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에 대해 이견(1998. 6. 4)
  - 공정위는 부채비율의 예외 인정 완화안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은 외형만 변화할 뿐 운용하지 못할 제도라고 평가하였다.
  - 전경련은 '세계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자료에서 공정위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 벤처기업, 국내 첫 지주회사 설립 추진(1998. 6. 8)
  - 엠토피아, 프론티어, 보람정보컨설팅, 커널 시스템 등 20개 벤처기업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자본금 50억원 규모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 전경련, 지주회사 설립 전면 허용 건의(1998. 7. 8)
  - 전경련은 7일 정부에 제출한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견'이란 건의서에서 정부가 부채비율 100% 이내, 상호채무보증 완전해소,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된 모든 규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 지주회사 연내 설립 허용(1998. 7. 29)
  -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올해 안에 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 이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려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한도가 철폐되고 30대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간 및 보증을 완전해소해야 하는 사전 규정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지주회사 설립 요건 확정(1998. 8. 4)
  - 새로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로 확정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청와대 등과 협의한 끝에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대해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안을 거의 그대로 관철하였다.

- 5개 단체, 지주회사 허용 반대(1998. 8. 12)
  -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등 5개 단체는 순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지주회사 설립에 반대했다.
  
- 국민회의, 지주회사 설립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구조조정을 지켜보며 시기결정(1998. 9. 17)
  -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허용시기는 대기업의 구조조정 속도에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민회의, 지주회사 설립 2000년으로 연기(1998. 9. 24)
  - 국민회의는 지주회사 설립을 2000년 4월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국민회의, 재벌기업의 지주회사 1999년부터 허용(1998. 12. 9)
  - 국민회의는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대기업 지주회사 설립을 1999년부터 허용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 지주회사 설립 1999년 4월 허용(1998. 12. 17)
  - 정부는 대기업의 분사화 및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을 1999년 4월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00년부터 부채비율이나 자회사 지분을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지주회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다.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

### 1) 지주회사의 기준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는 지주회사를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였다. 여기에 추가하여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 제 2조의 2에서는 지주회사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 2)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기존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였던 공정거래법 제8조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지주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순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②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당해 자회사가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예외로 한다.

- ③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간은 당해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 ⑤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손자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 4)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 제한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 ②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 ③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 ④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제한의 예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 3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 등의 역부의 제공
- ②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의 관리
- ③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④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예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 4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예외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사업범위 및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할 것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등의 역부의 제공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한 제품의 생산·판매
  -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의 공급
  -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 ②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기타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라. 지주회사의 허용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전망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자신이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이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의 설립이 1999년 4월부터 허용되었으나, 실제로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일은 제한규정 때문에 어려울 전망이다.

제한규정은 첫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제한하고 둘째,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하여야 하며 셋째, 자회사 지분의 50% (공개기업인 경우는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현재 재주거래은행과 대출기업간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의해 대기업집단은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추어야 하는 실정임에 비추어 부채비율 100%는 아직은 매우 엄격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서로 얽혀 있는 상호채무보증을 고려해 본다면 지주회사의 설립이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지주회사 문제는 재벌조직 형태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논의되기도 한다. 정부는 향후 재벌의 조직형태를 독자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방법을 지주회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3)</sup>.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는 대신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자는 방안도 재벌을 소그룹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이고 자회사의 지분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정부 일각<sup>4)</sup>에서 나오고 있으며, 또한 재계에서도 이 정도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주회사 문제는 재벌의 조직

3) 『한국경제』, 1999년 8월 22일자.

4) 재경부는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재벌식 경영이 확고해진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제』, 1999년 8월 20일자.

형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다음에 설명할 이중과세문제 및 연결납세제도 등 조세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보다는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립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Ⅳ. 우리나라 法人의 株式分布 및 配當支給 現況

우리나라 법인의 타법인 주식보유 현황, 대기업집단의 상호지분보유 현황, 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액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본다.

### 1. 他法人 株式保有 現況

우리나라 법인의 타법인 주식보유 현황을 살펴본다. 자료의 제약으로 상장기업에 한정하여 주식소유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Ⅳ-1>과 같다. 이 표에 따르면 1989년부터 1997년 사이에 기관투자가, 기타법인,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정부 및 정부관리업체와 개인의 주식소유비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1998년의 주식소유 분포는 특히 기관투자가와 정부 및 정부관리업체의 경우 기존의 경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기관투자가와 기타법인이다. 기관투자는 기업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관투자의 주식소유비율은 1989년 13.6%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 후 2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에는 21.7%로 감소하였고, 이어 1998년에는 11.2%로 크게 감소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기관투자의 주식소유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상당부분 매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실기타법인의 타법인 주

식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 17.8%에서 1991년 15.5%로 감소하였다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에는 22.3%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92년 1월에 주식시장이 개방된 이후 <表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1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종전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됨에 따라 1997년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은 1995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은 1998년에 10.4%로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정부 및 정부관리업체의 주식소유비율이 1997년까지 꾸준히 감소한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 및 정부관리업체의 주식소유비율은 1998년 17.3%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면서 공적자금의 투입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개인의 주식소유비율이 감소한 것은 증권시장이 성장하면서 법인이나 외국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개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表 IV-1> 우리나라 上場會社 株式所有 分布

(단위 : %)

	1989	1991	1993	1995	1997	1998
정부 및 정부관리업체	11.8	10.0	8.6	8.0	6.6	17.3
기관투자자	13.6	27.6	28.0	26.8	21.7	11.2
은행	3.1	8.9	10.7	11.2	9.4	3.6
증권회사	5.1	4.9	4.7	2.9	2.1	1.3
투자신탁회사	2.7	7.7	6.2	6.3	2.7	2.0
보험회사	2.6	5.5	5.8	5.7	6.3	3.6
종합금융 및 신용금고	0.1	0.5	0.6	0.8	1.2	0.7
기타법인	17.8	15.5	17.2	18.6	22.8	22.3
개인	54.6	44.5	37.6	36.4	39.8	38.8
외국인	2.1	2.5	8.7	10.1	9.1	1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1999. 12.

〈表 IV-2〉 外國人 株式投資限度 變動推移

(단위 : %)

	1992.1	1994.12	1995.7	1996.4	1996.10	1997.5	1997.11	1997.12	1997.12	1998.5
종목당 한도	10 (8)	12 (8)	15 (10)	18 (12)	20 (15)	23 (18)	26 (21)	50 (25)	55 (25)	100 (30)
1인당 한도	3 (1)	3 (1)	3 (1)	4 (1)	5 (1)	6 (1)	7 (1)	50 (1)	50 (3)	100 (3)

주 : ( )안은 공공법인에 대한 것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대주주 1인<sup>5)</sup> 지분율은 〈表 IV-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이래 1993년까지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4년 들어 국민주를 제외할 경우 19.6%, 국민주를 포함할 경우 25.6%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1994년에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외환은행, 국민은행의 신규 상장과 대우중공업의 합병으로 인해 이들 기업의 높은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거 처분함에 따라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1997년말 현재 대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는 23억 9,839만주로 전체 집계주식의 26.8%를 차지하였다.

현재의 상장법인의 주식소유 분포를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한지를 예측해 본다.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지주비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소유 분포를 고려해 볼 때 30% 정도의 지주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기타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998년 22.3%에 달하는데 이는 대부분 계열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대주주

5) 대주주 1인이란 주주 1인과 그와 국제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와 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表 IV-3〉 大株主 1人 持分率 變動推移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국민주 제외	18.7	16.4	15.9	15.0	19.6	17.3	-	-
국민주 포함	26.5	24.5	23.0	22.0	25.6	22.1	21.6	26.8

주 : 조사결과상의 유의적인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따라 1996년부터는 전체 상장 법인  
을 대상으로 한 주식분포상황만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자료 : 한국증권거래소, 『주식』, 각호.

1인의 지분율이 1997년 기준으로 26.8%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재로서도 지주비율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므로  
지주비율의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지주회사의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되지는 않는다.

## 2. 大企業集團의 相互持分保有 現況

대기업집단의 상호지분보유 현황을 살펴본다. 〈表 IV-4〉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지분율의 변동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에는 대기업집  
단의 내부지분율이 56.2%에 달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여 1998  
년에는 44.5%로 낮아졌으나, 1999년에는 50.5%로 다시 높아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집단의 전체 지분 중 동일인과 특  
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대주주 1인 지분율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계열회사 지분율은 1990년대 들어 33%대에서 머물다가  
1998년에는 36.6%, 1999년에는 45.2%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  
주주 1인 지분율의 감소는 증권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외부자금 조달비  
중이 확대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계열회사 지분율의 안정현  
상은 기업집단이 다각화를 통해 계속 기업규모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99년 계열회사 지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총액출자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동일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1999년 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대주주 1인 지분율은 5.4%로 이는 상장기업<sup>6)</sup>의 22.7%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대주주 1인 지분에 계열회사 지분을 합하면 내부지분율은 50%를 넘는 높은 수준으로 소유경영자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이와 같이 높은 이유는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방식을 이용한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발행보다는 외부차입에 의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IV-4〉 30대 企業集團의 内部持分率 變動推移

(單位: %)

	1987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대주주 1인 지분(A)	15.1	13.7	13.9	12.6	10.3	9.7	10.5	10.3	8.5	7.9	5.4
계열회사 지분(B)	41.1	31.7	33.0	33.5	33.1	33.1	32.8	33.8	34.5	36.6	45.2
기업집단 내부지분율 (A+B)	56.2	45.4	46.9	46.1	43.4	42.7	43.3	44.1	43.0	44.5	50.5

주: 각 연도 4월 기준임.

자료: 삼성거래위원회.

상위 5대, 10대, 30대 기업집단별로 내부지분율을 비교하면 〈表 IV-5〉와 같다. 먼저 1989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주주 1인 지분율은 10대 기업집단이 13.4%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13.7%의 5대 기업집단, 14.9%의 30대 기업집단의 순이었다. 계열회사 지분율은 30대 기업집단이 31.3%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31.4%의 10대 기업집단, 35.7%

6) 상장기업의 대주주 1인 평균지분율은 1996년의 통계이다.

의 5대 기업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분율을 합한 내부지분율은 10대 기업집단이 44.9%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46.2%의 30대 기업집단, 49.4%의 5대 기업집단의 순이었다.

1998년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분율의 순위만 1989년과 같고 나머지는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은 10대 기업집단에서만 0.1%포인트 증가하였을 뿐 다른 두 기업집단에서는 소폭 감소하였는데, 30대 기업집단이 44.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45%의 10대 기업집단, 46.6%의 5대 기업집단의 순이었다. 1989년과 비교해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내부지분율은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열회사 지분율과 대주주 1인 지분율이 정반대의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열회사 지분율은 모든 기업집단에서 증가된 반면 대주주 1인 지분율이 모든 기업집단에서 1989년의 절반에 가까운 7%대로 떨어졌다.

대주주 1인의 지분이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기간 동안 대폭적인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상속 증여세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해 대주주가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계열회사의 지분이 이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및 비공개기업의 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주로 계열회사를 통해서 충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表 IV-5〉 大企業集團別 内部持分率 變動推移

(단위 : %)

	1989			1998		
	대주주 1인 지분	계열회사 지분	내부지분	대주주 1인 지분	계열회사 지분	내부지분
상위 5대	13.7	35.7	49.4	7.0	39.6	46.6
상위 10대	13.4	31.4	44.9	7.2	37.9	45.0
상위 30대	14.9	31.3	46.2	7.9	36.6	44.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현재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분포를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한지를 예측해 본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기업공개비율은 <表 V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수 기준으로는 23.3%에 불과하며 자본금 비율로는 그보다 배가 넘는 53.1%에 달한다. 비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지주비율이 필요하며, 상장법인이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지주비율이 필요하다.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 분포를 고려해 볼 때 50% 또는 30%의 지주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1999년 대주주 1인 지분율이 5.4%, 계열사 지분이 45.2%로서 내부지분율이 50.5%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도 지주비율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많을 것이므로 지주비율의 조건만을 생각한다면 30대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表 IV-6> 30대 企業集團의 企業公開 現況

(단위 : 개, 조원, %)

	계열회사		공개회사		공개비율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회사수	자본금
1998 <sup>1)</sup>	804	32.4	186	18.5	23.1	57.2
1999 <sup>2)</sup>	686	42.7	171	23.4	23.3	53.1

주 : 1) 1998년은 4월 15일 기준임.

2) 1999년은 4월 1일 기준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3. 上場企業의 配當金 支給 現況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表 IV-7>과 같다. 상장회사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배당회사수는 1990년을 최대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배당금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34.6% 감소하였으나, 1998년 다시 4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은 1조 5,124억원이었다. 1998년 법인의 타법인 주식소유비율은 22.3%,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11.2%, 개인의 경우는 38.8%였다. 따라서 1998년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 1조 5,124억원 중에서 3,373억원은 기타법인에게, 1,694억원은 기관투자자에게, 5,868억원은 개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생각해 본다. 개인 주주의 경우에는 1997년말 세법개정에 의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이의 9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투자대상 기업이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거의 해결되지만, 투자대상기업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인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있다. 기타법인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表 IV-7〉 上場法人 配當 現況

(단위 : 사, 백만원, %)

결산기	회 사 수		배당금 총액	배당성향			평균배당률			
	배당 회사수	전기 대비		당기	전기	당 기		전 기		
			유배사			무배사 포함	유배사	무배사 포함		
1988	328	296	630,113	46.7	43.0	45.3	12.8	8.6	...	8.0
1989	442	396	858,451	17.1	33.7	29.1	11.1	10.0	12.6	10.0
1990	461	441	939,837	8.6	39.1	31.8	10.3	...	11.2	...
1991	465	439	861,929	-9.6	32.6	38.5	9.2	...	10.3	...
1992	458	375	877,417	2.0	35.3	32.1	8.4	...	9.3	...
1993	462	375	933,516	5.5	42.2	36.0	8.4	...	8.6	...
1994	480	399	1,194,074	24.5	26.9	39.1	8.6	...	8.6	...
1995	500	404	1,497,940	24.1	22.0	25.6	8.9	...	8.7	...
1996	523	401	1,479,923	-8.4	56.8	18.1	9.7	...	9.4	...
1997	530	302	963,630	-34.6	25.7	32.7	8.6	...	9.9	...
1998	511	289	1,512,351	44.9	20.5	27.3	9.4	...	8.5	...

주 : 1)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금융·보험업 제외.

2) 평균배당률은 소액주주 배당률을 기준으로 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1999.10.

## V. 持株會社制度의 導入과 有關한 課稅問題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세제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크게 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과세문제와 지주회사의 설립 후의 과세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持株會社 設立時의 課稅問題

제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설립형태는 분사형, 통합형, 그리고 중간형이 있다. 분사형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각 사업부문을 분사화해서 여러 개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자신은 순수지주회사가 되는 형태이다. 각 사업부문이 분사화하여 여러 개의 법인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방법과 기업분할(물적분할)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통합형은 여러 개의 기존의 사업회사가 상층에 지주회사를 두고 자신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는 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먼저 설립하는 방법과 자회사부터 먼저 설립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지주회사가 될 회사를 먼저 설립하는 방법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들의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하여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자회사부터 먼저 설립하는 방법은 사업회사들이 각각 자신의 영업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주식만 가진 이들 지주회사들이 합병을 하여 하나의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다.

중간형은 기존의 사업회사가 산하에 일부 사업부를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그 지주회사가 복수의 자회사를 거느리는 형태이

다. 이러한 형태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분사형 또는 통합형과 관련된 과세문제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지주회사의 설립시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일반적인 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거의 동일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가. 분사형과 관련된 과세문제

### 1)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시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 가) 법인세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총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압축기장총당금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 나) 특별부가세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재산 중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가액에서 지주회사의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특별부가세를 자회사에 과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자산이 미등기 양도토지일 경우 세율 30%의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15%의 특별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법인세법 제99조, 제101조).

다) 부가가치세

양도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영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라) 저가 양도시 과세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만일 양수법인이 양도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기업분할(물적분할)시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가) 법인세(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지주회사가 물적분할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이하에서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이라고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를 과세이연한다.

-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지주회사의 주주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지주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 ③ 자회사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지주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급에 산입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손급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급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 ① 자회사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주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②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주회사가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 나) 특별부가세

일정한 요건<sup>7)</sup>을 갖춘 경우로서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99조).

#### 3) 자회사에 대한 과세

자회사의 설립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0.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37조). 반면 자회사의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 나. 통합형과 관련된 과세문제

지주회사의 설립시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0.4%에 해당하

---

7) 물적분합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37조).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취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기타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가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이상은 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이다. 자회사를 먼저 설립하는 경우에는 앞의 분사형과 관련된 과세문제와 동일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에 추가하여 자회사 주식만 가진 여러 지주회사들이 하나의 지주회사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과 관련한 조세문제가 발생한다. 합병과 관련한 과세문제는 그 자체가 복잡한 문제로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2. 持株會社 設立 以後의 課稅問題

지주회사의 설립 이후의 과세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이 이중과세된다는 문제와 분사화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지주회사 설립 전에 비해 많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 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문제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자회사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며 자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모회사가 배당을 받으면 그 수취배당금은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또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간 배당제도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말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gross-up 비율(배당가산율)이 19%이었다. 이 비율은 법인세율의 최저세율인 16%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있으면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begin{aligned} \text{gross-up 비율}(\%) &= \frac{\text{법인세부담률}}{(1-\text{법인세부담률})} \times 100 \\ &= \frac{0.16}{(1-0.16)} \times 100 = 19 \end{aligned}$$

그러나 1997년 말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법인세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gross-up 비율을 종전과 같은 19%와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비율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먼저 법인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법인세부담률} = \frac{\text{법인세부담률}}{\text{법인의 소득금액}} \times 100$$

이로부터 gross-up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text{배당가산율} = \frac{\text{법인세부담률}}{(1-\text{법인세부담률})} \times 100$$

즉, 법인세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19%로는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되지 않으므로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을 선

택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는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sup>8)</sup>. 다만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sup>9)</sup>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199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상당부분 조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이상 80% 이하인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한다. 또한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

8)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이의 90%의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18조).

9)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을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내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주비율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추후 시행령을 개정하여 배당소득 중에서 익금불산입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자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타법인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 중에서 다음의 금액만큼 익금불산입하지 못하게 한다.

$$\text{익금불산입제한액} = \text{익금불산입액} \times \frac{\text{자회사의 타법인 출자액}}{\text{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액}}$$

둘째, 차입금을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당소득 중에서 다음의 금액만큼 익금불산입하지 못하게 한다.

$$\text{익금불산입제한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지주회사의 차입금}}{\text{지주회사의 총자산액}} \times \text{해당 공제율}$$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지주회사나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

지주회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과세문제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 과세문제이다.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분사화 전에는 회사 전체로는 이익이 나지 않았으나 분사화

한 후 한 자회사는 흑자가 나고 한 자회사는 적자가 난다고 가정해 보자. 분사화 전에는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분사화한 후에는 흑자가 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VI. 配當所得의 二重課稅 調整方案

### 1. 主要國의 法人間 配當에 대한 課稅制度

#### 가. 미국

#####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일반원칙

원칙적으로 모든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총소득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의 한도는 ① 배당을 하는 법인의 주식수 및 주식가액의 20%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 ② 배당을 하는 법인의 주식수 및 주식가액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80% ③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적격배당금(qualifying dividend)<sup>10)</sup>의 100%, ④ 소규모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금의 100%이다.

다만 배당금공제의 총액은 수취배당금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 후 결손금, 배당금, 자본손실의 이월액 공제 전의 당기 소득액의 70%(위의 ②의 경우에는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규정은 먼저 80%가 공제되는 배당금에 적용되며 그 다음에 70%가 공제되는 배당금에 별도로 적용된다. 즉, 먼저 20% 이상 소유한 관련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해서는 당기 소득액의 80%를 넘는지를 산정하고, 다음

---

10) 적격배당금이란 같은 특수관계법인집단에 속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말한다.

20% 이상 소유한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취배당금을 차감한 후 당기 소득액의 70%를 넘는지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완전공제를 할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이러한 제한규정은 당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IRC 제246 (b)(2)조).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는 국내법인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반면 과세연도 또는 그 전에 비과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IRC 제246(a)조).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전기의 배당일 45일 전날 부터 시작하여 90일 기간 동안 45일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IRC 제246 (c)(2)조, 규칙 1. 246 - 3). 만일 주식이 누적우선주식이면 전기의 배당일 90일 전날부터 시작하여 180일 기간 동안 91일 이상이 아니면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IRC 제246(c) (2)조, 규칙1. 246 - 3).

###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과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적격배당금의 100%가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연결납세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적격배당금도 100%가 공제된다(IRC 제243(a)(3), (b)조). 만일 특수관계법인집단이 한 개 이상의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하고 있다면,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어떤 멤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도 적격배당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IRC 제243(b)조). 특수관계법인집단에 속한 어떤 법인이 외국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00% 공제를 받는 적격배당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멤버기업이 외국세액공제를 선택해야 한다(IRC 제243(b)조).

### 3)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과세

내국법인에 의해 최소 10%의 주식이 소유되는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의 미국 국내원천부분의 70%가 공제된다. 반

면 수익의 전부가 미국 국내원천이고 100% 보유되어 있는 외국자회사 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은 그 전액이 공제된다(IRC 제245(b)조). 또한 외국판매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그 전액이 공제된다(IRC 제 245(c)조).

#### 4) 차입금으로 구입한 주식에 관련된 수취배당금

차입금으로 구입한 포트폴리오 주식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수취배당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즉,  $(100\% - \text{평균차입률}) \times 70\%$  (20% 이상 소유한 관련 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80%)를 곱한 부분만이 공제된다(IRC 제246A(a)조). 다만 이 금액은 당해 차입금의 지불이자액을 한도로 한다(IRC 제246A(e)조).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관련그룹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와 소규모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등 100%를 공제받는 배당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영국

###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일반원칙

영국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의 이중과세 조정이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인의 이익, 자산의 양도 및 이자지급 등에 대하여 선납법인세(Advanced Corporation Tax: ACT)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선납법인세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납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선납법인세 세율}(\%) = \frac{\text{개인소득세 최저세율}}{(100 - \text{개인소득세 최저세율})}$$

현행 개인소득세의 최저세율은 25%이므로 선납법인세의 세율은

20/80이 된다. 이 선납법인세는 그 법인에 환급되지는 않지만 그 배당이 이루어진 회계기간의 법인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정규의 법인세액과 상계한다. 법인세액에서 선납법인세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법인세(MCT: Mainstream Corporation Tax)라고 한다.

영국내 거주 법인이 영국 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이에 수반된 선납법인세를 합한 소득을 면제투자소득<sup>11)</sup>(FII: Franked Investment Income)이라고 하는데, 법인이 면제투자소득을 수취하고 적격배당(qualifying distribution)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면제투자소득에 포함된 선납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의 당해 회계연도의 배당금액(FP: Franked Payments)이 면제투자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선납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ICTA 제241조). 당해 회계연도에 면제투자소득이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6년 전기이월되거나 무기한 차기이월되어 차기에 납부할 선납법인세와 상계된다.

법인은 면제투자소득의 초과액을 총소득에서 법인세를 상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정 항목들을 공제할 수 있다.

- ① ICTA<sup>12)</sup> 제393(2)조, 제393A(1)조에 근거한 손금
- ② ICTA 제338조에 근거한 납부금
- ③ ICTA 제75조, 제76조에 근거한 관리비용
- ④ CAA<sup>13)</sup> 제145(3)조에 근거한 감가상각비용
- ⑤ ICTA 제573조에 근거하여 투자회사가 특정 법인에 청약한 비상장 주식의 처분에 의해 발생한 손금

11) 다음과 같은 소득은 면제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ACT를 납부하지 않고 관련그룹법인 혹은 컨소시엄 내에서 배당되는 그룹 소득
- ② Building Societies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③ 해외소득배당(foreign income dividends)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되는 배당소득

12)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3) Capital Allowances Act.

## ⑥ 대출관계에서 발생한 비거래 손실

###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과세

영국의 모회사가 영국 내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51% 자회사)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한 배당에 대해 ACT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영국 소재 모회사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ACT 중 법인세와 상계되지 않은 초과부분을 51% 자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자회사에 이전된 ACT는 모회사에서 배당된 날과 동일한 날에 자회사에 의해서 배당되어 납부된 것으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ACT는 자회사단계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확정법인세와 상계되거나 차기로 이월된다. 단, 전기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그룹법인 내 배당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배당법인(paying company)<sup>14)</sup>과 수취법인(receiving company)은 영국 내 기업이어야 한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그룹소득은 배당법인의 소득과 배당법인의 51% 자회사인 수취법인의 소득이다. 만일 투자대상(investments)의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이 법인의 거래수입(trading receipt)으로 취급된다면 수취법인의 배당금 등은 그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과세

선납법인세제도는 해외 자회사(non-resident subsidiaries)를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영국법인이나 영국 내 지주회사로 해외출자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 불리한 과세내용(disincentive)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세액공제 시스템에서는 외국납부

---

14) 배당법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51% 자회사 ② 수취법인을 포함하는 컨소시엄에 의해 소유되는 거래회사와 지주회사(trading and holding company). 단, 75% 자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회사와 지주회사는 제외된다.

세액공제를 통해 영국 법인세액이 감소하여 선납법인세와 상계할 영국 법인세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상계되지 못하는 선납법인세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 4) 해외소득배당과 국제지주회사

해외원천소득과 국내 지주회사의 ACT 초과부담과 관련된 선납법인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4년 해외소득배당(Foreign Income Dividend)과 국제지주회사(International Headquarters Companies)에 대한 규정이다.

##### 가) 해외소득배당(Foreign Income Dividend: FID)

해외소득배당이란 처분가능한 해외소득(Distributable Foreign Profits: DFP)<sup>15)</sup>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배당을 말한다. 이러한 DFP에서 이루어진 FID에 의해 나타나는 ACT에 대해서 배당하는 회사는 외국소득배당을 실시한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내에 ACT 초과액을 되 돌려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경우 ACT 초과액은 환급되지만, 관련된 ACT 전체 금액은 개념상의 공제액이 되고, 주주에게서 환급되지 못하고,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이 납부할 ACT와도 상계될 수 없다. 다만, FID 지급금액과 상계될 수 있으며, 수취금액이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수취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나) 국제지주회사(International Headquarters Companies: IHC)

국내법인의 출자지분에서 최소 80%를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비거주 출자자 각각의 출자비율이 5%를 넘는 경우 국제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IHC는 실제로 여러 기업의 headquarter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

---

15) 외국사업소득, 배당 등 조세조약에 의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합계에서 외국납부세액 및 영국 내 법인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만, DFP로부터 FID를 지급하면서 ACT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IHC의 FID 배당 중 DFP로부터 나온 부분이 아닌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ACT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세액공제에 의해 상쇄되지 않는 회사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국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10%의 세율로 징수되고 IHC에 배당된 이윤은 21% 영국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 5) 법인세 계산 예

거주법인의 총이윤은 150만파운드이고 총이윤 중 30만파운드는 국내 거래이윤이고 120만파운드(해외과세 36만 파운드 포함)는 비거주 자회사로부터의 해외배당소득이다. 이 회사의 정책은 75%의 이윤을 현금으로 배당하고 ACT 지불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는 ACT 잉여를 발생시킨다.

〈表 VI-1〉 英國의 法人稅 計算例

(단위 : 파운드)

영국 내 소득	300,000
해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840,000+360,000) <sup>1)</sup>	1,200,000
과세대상 총이익	1,500,000
법인세(31%) <sup>2)</sup>	465,000
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공제) <sup>3)</sup>	-360,000
순법인세(영국에서 납부하는 법인세)	105,000
배당 및 ACT를 위한 처분가능한 이익	
영국 내 소득	300,000
순해외소득	840,000
소계	1,140,000
순법인세	-105,000
처분가능한 이익 <sup>4)</sup>	1,035,000
배당금	621,000
ACT(세액공제 포함) 20/80	155,250
소계(75%×1,035,000) <sup>5)</sup>	776,250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에 대한 납부법인세(mainstream corp. tax) 산정

	영국 내 소득	해외 소득
영국법인세(31%)	93,000	372,000
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공제)	0	-360,000
순법인세	93,000	12,000
	-60,000	-12,000
납부법인세(MCT)	33,000	0

∴ 총 ACT 납부액=155,250, 상계된 ACT는 72,000, 상계되지 않은 ACT 초과분은 83,250이 된다.

주 : 1) 해외소득 = 순해외배당금(840,000) + 해외과세액(360,000)

2) 법인세 = 총이익(1,500,000) × 0.31

3) 이중과세공제액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해외과세액 36만 파운드를 국내배당 소득과 이중과세되지 않게 공제한 가액

4) 순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

5) 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순이익중 75%를 현금으로 배당하는 금액

자료 : Kesti, J., and P.S. Andersen(ed.) (1998), p. 538

## 다. 독일

### 1)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일반원칙

독일의 기업관련세제는 크게 법인소득세와 영업세(business tax)로 구분한다. 법인소득세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과 같은 법인의 이윤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영업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의 소득과 자본에 대해서 연방세율에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독일의 법인세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임퓨테이션(Imputation) 시스템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임퓨테이션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국내거주 법인과 국내거주 주주간에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이다(법인세법 제14조). 국내거주 주주란 국내에 주소를 갖는 모든 무제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인인과 국내에서 법인세 부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국외거주자와 같이 제한적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임퓨테이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법상 법인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등도 배당소득을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받을 수 없다(소득세법 제36조 제2항 제3호,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 가) 배당법인

독일에서는 법인으로부터 주주의 소득으로 유입되는 모든 이익들은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30%의 배당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익이 배당될 경우 정상법인세율 45%로 과세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감소가 필요하며, 만약 법인에서 법인세가 면제된 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당세율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가 필요하다<sup>16)</sup>

16) 독일의 기업관련 각종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는 1994년 이후 적용되는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일반 정액세율은 45%법인이 이윤을 배당할 경우 당기이윤이나 준비금에 상관없이 법인소득의 일부가 환급됨으로써(15%) 이윤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은 30%이다. 미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45% 이하이거나 독일법인세가 부과되지 않

임퓨테이션 시스템이 실제로 적용될 때의 배당은 사용가능 자기자본 (Verwendbares Eigenkapital)<sup>17)</sup>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법인세법 제 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가능 자기자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① 정상법인세율 45%를 부담한 소득에서 발생한 자기자본(EK45)
- ② 배당법인세율 30%를 부담한 소득에서 발생한 자기자본(EK30)
- ③ 법인세가 면제된 소득에서 발생한 자기자본(EK0)(예: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면제된 외국소득)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면 사용가능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어느 사업연도에 이익배당이 있게 되면 이익배당 결정일 이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사용가능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나) 수취법인

법인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는 주주에게 자본재산소득으로 귀속된다(소득세법 제20조 1항 1호). 주주의 배당소득은 배당원천징수세 25%가 적용되어 실제로 주주가 수취하는 순배당소득은 배당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수취법인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원천징수세와 현금배당을 합한 배당금액과 법인세 공제대상세액(귀속법인세액)으로 구성된다. 법인세 공제대상세액(귀속법인세액)은 배당금액에 30/70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러므로 수취법인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법인의 법인세 과세전 이익

은 경우(즉, 해외원천면세소득 혹은 특정 면세소득)는 환급세율을 경감하거나 가산세(additional tax)를 부과함으로써 배당소득에 실효세율이 항상 30%가 되도록 조정한다.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30%이다.

-5.5% 공동부가세(Solidarity surcharge)는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의 법인과세액에 부과된다. (1998년 1월 1일 이전의 부가세율은 7.5%)

-영업세(business tax): 기본 연방세율의 240~515%의 추가세율. 통상적으로 법인소득세 목적상 과세소득의 12~2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임퓨테이션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7) 사용가능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자기자본부분으로 배당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말한다.

과 동일하게 된다. 귀속법인세액과 배당원천세액은 세액공제된다. 주주의 소득세액이 공제될 귀속법인세액과 배당원천세액을 합한 것보다 작으면 초과납부된 세액은 주주에게 환급될 수 있다.

## 2) 외국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에 대한 과세<sup>18)</sup>

해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제가 이루어진다. 또한 다음과 같은 계열사 관계가 충족될 경우 간접적인 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 ① 모기업은 국내 거주기업이고 자회사는 비거주 기업이어야 하고,
- ② 모기업이 배당결정일 12개월 전까지 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 ③ 자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계열사 관계를 만족시킬 경우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는 모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자회사간 세액공제는 일방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세조약(Tax Treaty) 규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3) 법인세 계산 예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와 세액공제의 예는 <表 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8) 해외원천인 통상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일반적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45% 법인소득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원천 소득의 독일 법인세 부담은 대부분 0%보다는 높지만 45% 보다는 낮다. 국내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해외원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자기자본의 세율부담은 0%와 45% 사이에서 다양하게 결정된다.

〈表 VI-2〉 獨逸의 法人稅 計算例

배당법인 단계	
① 법인의 세전이익	100
② 법인세(45%)	-45
③ 사용가능 자기자본	55
④ 법인세 감소	+15
⑤ 배당	70
⑥ 배당원천징수세(25%)	-17.5
⑦ 현금배당액	52.5
수취법인 단계	
⑦ 현금배당액	52.5
⑧ 배당원천징수세 그로스업	17.5
⑨ 총배당액	70
⑩ imputation 공제액(총배당액의 30/70)	30
⑪ 과세대상액	100

자료 : Kesti, J., and P. S. Andersen(ed.) (1998), p. 182.

### 라. 일본

일본은 법인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받는 배당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수취배당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1) 배당의 범위

익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배당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다(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① 이익의 배당(중간배당을 포함함), 잉여금의 분배(출자에 관련된 것에 한함) 또는 특정주식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액
- ②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외국신탁, 특정주식투자신탁 및 특

정외화권증권을 제외함)의 수익의 분배에 대하여는 다음에 말하는 금액의 2분의 1(외화권증권 등에 신탁재산의 50% 이상 75% 이하를 운용하도록 지도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4분의 1)

- ㉠ 증권투자신탁 기간중에 분배되는 수익의 분배에 대하여는 그 금액(오픈신탁은 그 금액에서 특별분배금을 제외한 금액)
- ㉡ 증권투자신탁의 종료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일부 해약에 의해 분배되는 수익의 분배는 그 금액이 신탁종료시 그 원본인 수익증권의 장부가액과 원본상당액(오픈신탁은 특별분배금을 포함한 금액) 중에서 많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2) 과세의 일반원칙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금액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3조).

- ① 특정주식 등 이외의 주식 등에 대하여 받는 배당액: 당해 배당합계액으로부터 당해 특정주식 등 이외의 주식 등에 관계되는 부채이자액을 공제한 금액의 80% 상당액

공제부채이자액 = [ 당기의 총부채이자 - 특정이자 ]

당기말 및 전기말의 주식, 출자 및 특정주식 투자신탁의 장부가액 × (특정주식등을 제외함)	+ 당기말 및 전기말의 증권투신의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의 2분의 1 (일정의 외국투신은 4분의 1)
--	--

---

당기말 및 전기말의 총자산의 장부가액 - 당기말 및 전기말의 특정이자의 원본

- ② 특정주식 등에 관하여 받는 배당액: 당해 배당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당해 특정주식 등에 관련되는 부채이자액을 공제한 금액

$$\begin{aligned} \text{공제부채이자액} &= [\text{당기의 총부채이자} - \text{특정이자}] \\ &\times \frac{\text{당기말 및 전기말의 특정주식 등의 장부가액}}{\text{당기말 및 전기말의 총자산의 장부가액} - \text{당기말 및 전기말의 특정이자의 원본}} \end{aligned}$$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의 2에서는 특정주식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특정주식 등이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교부받는 배당액의 지불의무가 확정하는 날이전 6월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배당 등을 지불하는 다른 내국법인이 그 배당 등의 지불의무 확정일 이전 6월 이내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설립일로부터 그 확정하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주식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소유기간에는 종전의 소유자가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했던 기간을 포함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의 2).

- ① 합병·피합병 법인의 보유기간
- ② 특별법률에 기초하는 승계·피승계 법인의 보유기간
- ③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출자(법인세법 제51조의 특정출자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당해 다른 법인의 보유기간
- ④ 주식 등의 양도(조세특별조치법 제67조의12 제1항에 규정하는 합병일 이후 1년 이내에 행해진 은행주식회사의 당해합병에 관련되는 합병법인으로부터의 자회사주식 등의 양도에 한함): 당해합병에 관련되는 합병법인의 보유기간

#### 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국제비교

주요 선진국의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제도를 정리하면 <표 II-3>과 같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임퓨테이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

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수취배당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수취배당공제방식은 모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취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다. 영국과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임퓨테이션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배당금과 그 귀속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그 법인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表 VI-3〉 主要國의 配當所得 關聯 稅制

유형	배당소득 관련 세제
미국 수취배당 공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총소득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함.</li> <li>○ 배당을 하는 법인의 주식수 및 주식가액의 20%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70%</li> <li>○ 배당을 하는 법인의 주식수 및 주식가액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80%</li> <li>○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적격배당금(qualifying dividend)의 100%</li> <li>○ 소규모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금의 100%</li> </ul>
영국 imputation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원칙</li> <li>○ 배당금의 20/80인 선납법인세(ACT)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가산되어 과세투자소득(franded investment income)을 이루는데, 수취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과세투자소득에 포함된 선납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li> <li>- 51% 자회사의 경우</li> <li>○ 모회사가 영국내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한 배당에 대해 ACT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독일 imputation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취법인의 자본소득 징수 전 수취배당액에 30/70을 가산한 금액을 수취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한 다음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수취배당액의 30/70을 공제함.</li> </ul>
일본 수취배당 공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금액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li> <li>○ 특정주식 등 이외의 주식등에 대하여 받는 배당의 경우 당해 배당합계액으로부터 당해 특정주식 등 이외의 주식 등에 관계되는 부채이자액을 공제한 금액의 80% 상당액</li> <li>○ 특정주식<sup>1)</sup> 등에 관하여 받는 배당의 경우 당해 배당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당해 특정주식 등에 관련되는 부채이자액을 공제한 금액</li> </ul>

주 : 1) 특정주식 등이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교부 받은 배당액의 지분의무가 확정하는 날 이전 6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 2. 二重課稅 調整方案의 檢討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문제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인이 주주로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주회사인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문제로 그 범위를 좁혀서 이중과세 조정방안을 검토해 본다.

### 가. 지급배당공제방안

지급배당공제방안은 자회사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즉, 법인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은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지급배당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자회사의 소득 중에서 유보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고 모회사에 배당되는 부분은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된다.

지급배당공제방안은 그 자체로서 장단점이 있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 는 첫째, 이중과세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배당 상당액을 자회사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방안의 단점으로는 지급배당공제방안이 채택될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과도한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배당을 과도하게 하면 기업의 내부유보를 크게 감소시켜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은 기업의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을 허용하는 경우 상법 및 기업회계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9)</sup>. 상법 제462조 제1항에서는 이익배당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

으로 보고 있다. 즉,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차액이 배당가능이익이다. 이와 같은 상법상의 이익개념은 기업회계에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기업회계상의 이익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배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은 상법과 기업회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나.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안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안은 모회사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자회사의 세후소득 중에서 실제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은 모회사의 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임퓨테이션방안은 배당절차에 의해 실제 수령한 배당금과 실제 배당금이 자회사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귀속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그 법인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을 수취한 모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때 귀속법인세의 gross-up 비율을 다음과 같이 자회사의 실제 법인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할 수 있다. 자회사의 법인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법인세부담률} = \frac{\text{법인세 납부세액}}{\text{법인의 소득금액}} \times 100$$

gross-up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19) 이하의 논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1997) 참조.

$$\text{배당가산율} = \frac{\text{법인세부담률}}{(1-\text{법인세부담률})} \times 100$$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모회사의 배당소득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과중감을 제거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둘째, 현재 개인주주에게 행해지고 있는 배당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주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별하지 않는다.

이 방안은 자회사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 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 다. 수취배당공제방안

수취배당공제방안은 모회사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즉, 법인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된 부분이 모회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모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 전액을 제외시키거나 수취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수취배당공제방안의 장점으로는 첫째, 이중과세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수취배당금을 모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익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정책당국의 의지가 이중과세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정함으로써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안의 단점으로는 임퓨테이션방안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인다가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라. 지급배당공제와 imputation의 혼용 방안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자회사 단계에서 지급배당금의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50%는 모회사 단계에서 gross-up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위의 두 방안을 혼용함으로써 두 방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희석하려는 방식이다. 즉,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지급배당금의 50%만을 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모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때에는 나머지 50%에 대해 gross-up 비율을 계산하여 귀속법인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첫째, 법인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배당여력을 증대시켜 배당성향을 높여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둘째, 주주에게는 실질적인 배당세액의 감소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반면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세제가 다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 마. 이중과세조정방안의 평가

### 1) 각 방안의 평가

자회사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지급배당공제 방안의 경우 앞에서 조사한 국가들 중에서는 어느 나라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리스(Greece)가 이 방식에 의해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다.

지급배당공제방안은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배당 상당액을 자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매우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급배당공제방안이 채택되어 장기간 시행될 경우 자회사가 법인세를 부

담하는 대신 과도한 배당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배당을 과도하게 하면 기업의 내부유보를 크게 감소시켜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회사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임퓨테이션(imputation)방안과 수취배당공제방안은 앞에서 조사한 국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임퓨테이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수취배당공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임퓨테이션방안은 배당금과 그 귀속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모회사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고 그 법인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수취배당공제방안은 모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취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두 방안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주주에게 행해지고 있는 배당세액공제제도가 임퓨테이션방안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므로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임퓨테이션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임퓨테이션방안은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취배당공제방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수취배당공제방안이 훨씬 나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당국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즉, 정부가 일시에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중과세의 해소비용을 점차 상향 조정하려는 경우와 지주비율에 따라 이중과세의 해소비용을 달리 하려는 경우에 수취배당공제방안을 채택하면 이를 쉽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지급배당공제방안과 임퓨테이션방안을 결합한 방안이 수취배당공제방안 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 방안은 지급배당공제방안과 임퓨테이션방안을 혼용함으로써 두 방안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

으며 세계가 다소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현실화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책당국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일 경우 이 방안은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 2) 지주회사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1999년 세법개정안의 평가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1999년 세법개정안은 수취배당공제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수취배당공제방안이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간편하게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1999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수취배당공제방안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정함으로써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한다. 또한 두 가지 경우에 익금불산입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자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타법인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액에 대한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소득 중에서 익금불산입하지 못하는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총자산액에 대한 지주회사의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배당소득 중에서 익금불산입하지 못하는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수취배당공제방안이 간편하게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쉽게 정할 수 있고 타법인 출자나 차입금 등의 규모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의 채택은 바람직

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는 더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1999년 세법개정안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상당부분 조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지주회사나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선진국의 경우 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 그 법인이 지주회사이든 아니든 간에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지주회사나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익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1999년 세법개정안은 익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80%와 50%로 하고 있으며,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50%와 30%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분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으로 허용받기 위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적용이 결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향후 지분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익금불산입의 한도에 관한 문제이다. 1999년 세법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상장·등록법인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주비율 50% 이상 80% 이하(상장·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익금불산입의 한도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지분비율이 80%를 초과하면 배당금의 90%를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지주비율 80% 이하이면 배당금의 80%를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이외에도 1997년말 세법개정에서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의 한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나 지주회사의 차입금 등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중에서 익금불산입의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이다. 타법인 출자나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연쇄출자나 차입금을 통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세제는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에 비해 더 유리하게 대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자본의 사용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되는 반면, 자기자본의 사용에 대한 배당은 손금불산입되었다. 그런데 이 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세는 우리나라의 세제는 자기자본을 타인자본에 비해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재무구조의 개선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찾아서 그 근본을 치유해야 하고 세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일반론을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급격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주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배당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제한하는 현행안보다는 차입금 배수(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비율)를 정하여 그 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지급이자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배당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Ⅶ. 連結納稅制度의 導入方案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자회사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OECD 회원국들만 본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벨기에, 캐나다, 체코,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등 10여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구미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1. 主要國의 連結納稅制度

#### 1) 연결납세제도의 발전단계<sup>20)</sup>

미국의 법인소득과세에서 연결납세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17년 세입법규칙 41호에 규정한 것이었다. 이 규칙의 제78조에 투하자본 및 과세소득을 보다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입청 장관은 77조의 관련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순소득 및 투하자본연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전비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초과이익세(excess profits tax)에 의한 누진세율과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서 소득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는 조세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적용은

20) 이 내용은 井上久彌(1995), pp. 35~42 참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고 세입청 장관의 판단에 의해 강제 적용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초과이윤세의 연결과세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 등도 있었기 때문에 1918년에 의회는 세입법으로 법률화함과 동시에 초과이윤세만이 아닌 법인소득세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제 적용하였다.

제1차 대전의 종결에 따라 1921년에 초과이윤세가 폐지됨으로써 조세 회피방지 목적으로서의 연결납세제도의 기능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역으로 모자회사의 소득을 분할함에 의해서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21년에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존속되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적용하도록 되었다(IRC 제240(a)조).

그러나 초과이윤세가 폐지되어도 일반 법인소득세에 대해서 자회사를 이용하는 조세회피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특히 외국무역회사로서 설립된 자회사 이윤의 자의적인 이전방지가 중요한 과세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21년 세입법에서는 한편으로는 연결신고의 선택에 대하여 세입청 장관의 허가와 계속적용이라고 하는 요건을 둔과 동시에(IRC 제240(a)조), 다른 한편으로는 연결신고 강제규정을 존속시키고, 세입청 장관은 이익, 이득, 소득, 공제 또는 자본의 정확한 배분 또는 할당을 하기 위해 관련사업(related trades and business)의 회계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IRC 제240(d)조).

그후 1928년 세입법에서 모자간의 이윤조작 규제장치로서, 1921년 회계연결방식을 대신하는 소득분배방식(이전가격세제)이 도입되었으며(IRC 제45조 : 현행 IRC 제482조), 또한 강제연결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연결납세는 납세자를 위한 선택제도라는 성격으로 일원화되었다. 그후 1932년에 연결세액에 대한 부가세(연결순소득에 대해 3/4%)가 적용되었지만, 당시의 불황하에서 재정수입의 증가를 꾀할 필요성과 불황에 의한 결손회사의 손익통산에 대한 반대론 때문에 연결

신고에 대한 비판이 초래되고, 1934년에는 철도회사를 제외하고 그 적용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초과이윤세가 제정되기에 이르러 1940년에 보험회사 등의 적용 제외규정이 설정되면서 초과이윤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연결납세제도가 부활되고, 계속하여 1942년에 법인소득세에 대해 전면적인 연결납세제도가 부활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부당한 조세경감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2%의 부가세를 부과하였다.

1954년에 세입법 개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범위를 종래의 지주기준 95%에서 지주기준 80%로 완화하여 종전의 제도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조세채무의 배분규정 등의 정비가 계획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재무성에게 탄력성 있는 규칙제정권이 부여되었는데(IRC 제1501조~제1504조), 재무성의 이러한 규칙제정권은 미국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에서 두드러진 법적 특징이 되고 있다.

1964년에 부가세 폐지, 1966년의 대폭적인 규칙개정(① 내부거래손익에 관해서 종전의 장부가 인수방식에서 매수측 손익이연방식으로로의 전환 ② 자회사장부가 수정규정 ③ 이월결손금공제 규정의 정비 등), 1984년 연결탈퇴 자회사의 5년 이내 재가입 금지, 1986년 80% 지주비율 요건에 대하여 종전의 의결권비율 기준 이외에 주식시가비율 기준의 추가, 1991년 자회사주식의 양도손부인 규정의 창설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연결납세의 대상

IRC 제1501조에서는 관련기업그룹(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각 기업별로 개별신고를 하는 대신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선택은 관련기업그룹이 IRC 제1504조에 규정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각 법인의 동의를 첩부한 연결납세신고서(consolidated return)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조건에 부합하여 연결납세를 하고자 하는 관련기업

그룹의 법인은 전부 연결납세를 하여야 하며 국제청의 승인이 없는 한, 그리고 당해 관련그룹이 존속하는 한 매과세연도마다 연결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에 연결신고에서 이탈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이탈 후 5년 이내는 이 과거연결신고와 동일모회사의 관련그룹의 연결신고에 참가할 수 없다(IRC 제1504(a)(3)조).

- ① 공통의 모회사가 각 관련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의 80%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주식의 각각 80%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
- ② 당해 모회사를 제외한 각 관련기업 주식의 80% 이상을 다른 관련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세법에서는 공통지배법인집단(controlled groups of corporations)에 대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공통지배법인집단 중에서 모사관계집단(parent-subsidiary controlled group)은 특수관계법인집단으로 간주되어 연결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1)</sup>.

모사관계그룹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IRC 제1563(a)(1)조).

- 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련의 법인들이 공통의 모회사와 주식소유권에 근거하여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 ② 모회사를 제외한 그룹내 각 법인의 의결권 또는 주식가액의 80% 이상이 그룹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 ③ 동일한 모회사가 ②에 표시한 법인(자회사 또는 손회사)의 주주인 법인(자회사)의 주식을 80% 이상 소유해야 한다. 다만 그룹에 속

---

21) 공통지배법인집단(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은 모사관계집단(parent-subsidiary controlled group), 형제관계집단(brother-sister controlled group), 그리고 결합관계집단(combined group)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는 다른 법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주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모자관계집단의 조건은 특수관계집단의 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자관계집단은 특수관계집단으로 간주되어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인은 연결납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IRC 제 1504(b)조).

- ① IRC 제501조에 의해 비과세되는 법인
- ② IRC 제801조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
- ③ 외국법인
- ④ IRC 제936조의 보유세 공제를 선택하는 기업
- ⑤ China Trade Act에 의해 설립된 법인
- ⑥ IRC 1M장(Chapter 1M)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
- ⑦ IRC 제992(a)(1)조에 규정된 국내수출전문회사(DISC: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 3)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가) 연결납세의 적용요건

관련기업그룹이 연결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Reg. 제1. 1502-75(a)(2)조). 국세청은 이 중지태 당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즉, 내국세입법 또는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연결신고가 개별신고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Reg. 제1. 1502-75(c)조).

다음으로 연결신고서는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기초로 하여 제출되기 때문에 관련기업그룹의 각 멤버는 모회사의 과세연도와 동일 사업연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IRC 제441(f)조).

마지막으로 내국세입법상의 과세소득은 납세자의 장부상 규칙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방법에 기초하여 계산해야 한다(IRC 제446(a)조). 납세자가 여러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그 사업마다 다른 회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IRC 제446(d)조). 또한 회계방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의 동의가 필요하다(IRC 제446(e)(f)조).

#### 나) 연결납세신고에 있어서의 수정사항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구성기업의 개별과세소득을 산출해야 한다. 연결 목적의 개별과세소득의 계산은 개별신고하는 경우의 개별과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연결수정 항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신고를 하기 위한 주요 수정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회사간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의 이연

회사간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란 연결납세신고연도중 관련기업그룹 내의 구성법인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를 의미한다<sup>22)</sup>.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거래를 포함한다.

- ①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
- ②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화되는 경우
- ③ 기타 IRC 제263A조의 Uniform Capitalization Rule에 따라 구성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자본화되는 경우

연결납세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연결그룹 이외의 법인에게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미실현상태로 이연되며,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이연된 손익은 추후 그 실현에 따라 상각자산, 할부채권 및 할부판매, 처분자산의 이연된 손익에 관한 규칙

22) 다음의 거래는 회사간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① 관련기업그룹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에게 한 배당처분
- ② 이익의 실현이 없는 자본금의 공여
- ③ 자본감소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
- ④ 그룹의 다른 구성법인 채무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 및 대손

에 의해서 환입된다.

(2) 회사간배당의 공제

연결신고기간중 관련기업그룹내의 구성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00%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익금에서 공제된다. 이에 비해 보통의 수취배당금에 대하여는 통상 그 70%(지주비율 20% 미만의 경우) 또는 80%(지주비율 20% 이상 80% 미만)가 공제될 뿐이다. 따라서 개별신고시에는 배당을 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수취배당소득 공제를 받고 그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연결신고시에는 배당소득 전부를 공제하게 된다.

(3) 회사간 채권거래에 따른 손익의 이연

관련기업그룹의 구성법인이 다른 구성법인의 채권을 소유하여 그 채권을 매각, 처분함에 따라 연결신고기간중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당해 손익은 이연된다. 회사간 채권거래에 따른 이연이익을 갖는 각 구성법인은 다음의 환입사유가 생긴 경우 그들 채권의 잔여기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이연손익을 환입시켜야 한다<sup>23)</sup>.

- ① 채권이 비구성법인에게 매각 또는 처분된 때
- ② 채권소유법인이 비구성법인으로 된 때

(4) 구조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공제(BID : built in deduction)에 대한 제한

BID란 개별신고시에 이미 경제적으로 발생한 손실의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경제적으로 발생했다 함은 경제적인 사유로 경비를 지출 또는 발생시켜 손실이 생긴 때에 공제할 수 있게 됨을 말한다. 즉, BID는 관련기업그룹이 구성법인이 아닌 타회사를 취득할 때 그 회사에

23)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각 구성기업의 이연 손익을 전액 환입시켜야 한다.

- ① 이연채권손익을 갖는 구성법인이 비구성법인으로 된 때
- ② 채권소유법인의 모든 주식이 처분되었다고 간주될 때
- ③ 채권이 상환 또는 소각된 때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손실의 공제를 뜻한다.

BID는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당해 과세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공제 부분은 동 구성법인의 다른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sup>24)</sup>.

#### (5) 재고자산 수정

관련기업그룹 구성기업간 재고자산 판매는 내부거래로서 그에 따른 미실현이익은 그 재고자산이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이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결초년도에는 기말 미실현이익의 이연이 있는 만큼 기초환입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세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연결초년도의 기초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고자산 수정이다<sup>25)</sup>.

#### (6) 연결손금산입한도액

연결납세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특정항목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할 때에는 개별계산을 단순합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자본기준 또는 세액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결신고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신고시보다 큰 금액범위까지 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각 구성기업들이 종전에 이월해야 했던 세액공제나 경비공제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흡수할 수 있게 된다.

#### 다) 결손금의 소급 및 이월

관련기업그룹의 구성기업간 소득 및 손실을 통산하기 위해 각 구성법인의 결손금은 다른 구성법인의 이익과 상쇄되고 상쇄 후의 이익이

24) 이렇게 BID를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한정하는 것은 이미 법인의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의 공제를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한 후에 관련기업그룹이 동 법인을 취득하여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쇄하기 위해 손실의 공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5) 재고자산 수정은 연결초년도에 당초재고액을 소득에 더하고 그 후에는 당초재고액을 상한으로 해서 매연도말 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의 증감을 소득에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연결납세신고를 종료할 때 손실에 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결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결손금은 동일연도에 있어서의 상쇄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후연도에 대한 결손금의 소급(3년)과 이월(15년)이 연결베이스로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당해 과세연도에서 소급 및 이월되는 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의 발생연도 순으로 가장 빨리 종료 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차례로 행해져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결손금의 상쇄를 목적으로 결손기업의 주식매수 등 조세회피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자회사의 취득이 결손금 공제 등에 의한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사업목적에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를 하기 전의 개별신고연도에 발생한 구성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는 상쇄할 수 없고 당해 법인의 소득만을 한도로 하여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별신고제한연도 규정이다. 셋째, 연결신고소유지분의 변화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의 주주의 50%를 초과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차기 이월을 제한하는 것이다.

#### 라) 연결과세소득의 계산

연결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관계법인집단에 속하는 각 구성기업의 개별과세소득을 산출해야 한다. 연결 목적의 개별과세소득의 계산은 개별신고하는 경우의 개별과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연결수정 항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연결계산 항목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연결신고를 하기 위한 주요 수정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을 외부거래를 통하여 완성될 때까지 이연
- ②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제외
- ③ 재고자산 수정
- ④ 초과결손금에 대한 조정

이와 같이 구성기업의 개별과세소득을 조정한 후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연결신고 기준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기업의 개별과

세소득 계산시 반영하였던 아래에 열거하는 제반 공제항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① 운영업손실 공제
- ② 자본손익
- ③ IRC 제1231조 손익
- ④ 자선기부금 공제
- ⑤ 수취배당소득 공제

이러한 조정을 기친 각 구성기업의 개별과세소득을 전부 합산한 과세소득을 관련기업그룹의 합산소득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서 동 합산소득에 대해 연결신고 기준으로 다음 항목들을 조정하게 된다.

- ① IRC 제1231조의 연결 순손실
- ② 연결자본 순이익을 가산
- ③ 연결 재해순손실 공제
- ④ 연결 운영업손실 공제
- ⑤ 연결 수취배당소득 공제

이상의 과정을 모두 거쳐서 산출된 것이 연결과세소득이다.

마) 연결법인세액의 계산 및 배분

#### (1) 연결세액의 계산

연결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연결세액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투자세액공제, 외국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연결납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세액공제의 계산도 연결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법인베이스의 세액공제 합계와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이어 연결예정납세액을 차감하여 연결확정신고납세액을 구한다.

#### (2) 연결세액의 각 구성법인에의 배분

관련기업그룹은 하나의 조세계산 단위이고 최종적인 납세주체는 각 구성법인이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신고 및 납부 등을 대행하고 과세소득이나 세액의 총액도 연결베이스로 계산되지만, 최종적으로 세액은 각 개별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연결세액을 자회사에 배분하

고 모회사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立替稅金의 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결세액의 배분방법으로는 IRC 제1552조에 규정된 이익구성법인에만 배분하는 소득법(①-③), IRC 제1502조 및 규칙 제1. 1502-33(d)조에 규정된 결손구성법인을 포함하여 배분하는 대체법(④-⑤), 그리고 IRS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연결세액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납세자가 최초로 연결납세신고서 제출시 선택한 방법에 의해 각 구성법인에 배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달리 선택하지 않으면 ①의 방법에 의한다.

- ① 각 구성법인의 연결과세소득의 비례로 안분하는 방법
- ② 각 구성법인의 개별신고 기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의 비례로 안분하는 방법
- ③ 연결납세에 의해 세액이 증가한 법인의 증가세액(=①-②)을 세액이 감소한 법인의 감소세액(=②-①)의 비례로 안분하는 방법
- ④ 결손법인이 이익을 계상하여 당해결손의 절세효과가 실현한 액을 당해 결손법인에 배분하는 방법
- ⑤ 결손발생연도에 결손에 의한 절세액을 결손법인에 안분(按分)하는 방법

위에서 제시한 방법 중 일반적으로는 소득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는 연결과세소득에 대한 각 구성법인의 귀속소득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할 때는 이익구성법인에만 세금을 배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결손구성법인의 결손금 조세절약효과가 다른 이익구성법인에 흡수됨에 따라 결손구성법인이 불리해지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결손구성법인에게 결손금 조세절약액을 환불하는 대체법의 선택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 나. 영국

영국의 그룹과세제도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영국의 세법에서는 동일한 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도 모든 회사는 각기 독립된 과세체(separate legal person)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룹의 계열사는 배당금과 부과금 등 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독립법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룹회사경감조치(Group Relief)나 컨소시엄경감조치(Consortium Relief)와 같은 특별조치가 있다.

### 1) 그룹회사간 배당 및 특정비용

#### 가) 적용기업

그룹회사간의 배당은 지급측과 수취측 쌍방의 선택('ICTA 제247조의 선택'이라고 함)에 의해 선납법인세(ACT: Advance Corporation Tax)없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모두 영국의 거주법인이어야 하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51% 그룹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의 '51% 자회사'<sup>26)</sup>인 경우
- ② 75% 그룹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의 '75% 자회사'인 경우
- ③ 컨소시엄 그룹 : 보통주식자본의 75% 이상이 단독 또는 복수의 다

---

26) 일반주식의 50% 이상이 다른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법인을 51% 자회사라고 한다. 비거주 법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거래주식으로 보유하는 법인이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은 51% 계열사가 될 수 없으며, 모기업이 주주나 자산소유자에게 배당되는 이윤의 50% 이상을 분배받지 않는 경우 51% 계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른 국내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또한 그 소유멤버의 주식소유가 각기 5% 이상인 회사

나) ICTA 제247조 선택의 효과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과 배당을 수취하는 법인은 ICTA 제247조를 선택할 수 있는데, ICTA 제247조 선택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ICTA 제247조가 적용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AC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금은 배당기업의 배당금액(franded payment) 혹은 수취기업의 과세투자소득(franded investment income)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룹 소득(group income)'으로 취급된다.
- ②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로열티, 장기자 등 의 비용)의 그룹간에 대한 지불도 'ICTA 제247조의 선택'에 의해 원천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ICTA 제349조<sup>27)</sup> 및 제350조<sup>28)</sup>가 적용되지 않는다.

ICTA 제247조의 선택은 반드시 검사관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선택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3개월 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하고, 거절하는 경우 법인은 배당법인이 과세평가지 갖게 되는 이의제기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연결납세제도의 선택이 승인되는 경우 승인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해당법인은 검사관에게 서면으로 무효청구를 할 수 있다. 배당금에 대한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배당법인은 세무당국에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배

27) ICTA 제349조에서는 이자가 아닌 어떤 형태의 연금이나 연간 지급금, 특허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불한 어떤 형태의 로열티나 기타 금액이 소득과세 부과대상인 이윤이나 소득으로부터의 지불금 또는 전채지불금이 아닌 경우, 당해 지불을 하는 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28) ICTA 제350조에서는 어떤 개인에 의한 또는 어떤 개인을 통한 제349조에서의 지불이 행해진 경우 그 개인은 검사관에게 그 지불명세를 제출하고 기본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당금에 대해서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함을 알릴 수 있다. 각 법인이 해당 조항에 대한 필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각 법인은 그러한 효력상실에 대해서 즉시 검사관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다) 선납법인세 공제액의 양도

모회사는 배당금 지불시 납부하는 당기의 ACT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자가 납부하는 법인세로부터 공제하지 않고 그 공제할 권리를 51% 자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이 결정한 비율로 2개 이상의 계열사에 대한 양도도 가능하다. 이때 각 계열사는 배당금이 지급된 당해 회계연도의 전기간 동안 양도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이전에 따라 자회사는 모회사가 ACT를 지불한 날에 자신이 ACT를 지불한 것이 되어 그 사업연도에 자신의 법인세와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자회사에서의 ACT 상쇄시에는 상쇄 한도액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상쇄 가능액은 이전된 ACT 중에서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ACT세율 20%를 곱한 금액이 한도로 된다. 자회사에서 사용되지 않은 ACT는 무제한 이월가능하여 미래의 세금과 상쇄할 수 있다.

#### 라) ICTA 제247조의 적용 예외

선택법인이 수취한 배당금과 불입금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신탁자격(fiduciary capacity)이 있는 법인이 수취한 배당금과 불입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거래주식으로 보유되는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수취법인이 면제조항으로 인해 세액공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불입금에 대해 반환청구(reclaim)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ICTA 제247조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1996년 11월 26일 이후 영국내 거주법인이 소유한 해외법인이나 해외계열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 조항이 적용된다.

#### 마) ICTA 제247조의 부적절한 선택에 대한 시정조치

연결납세제도가 부적절하게 선택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하는 경우 검사관이 선택의 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 관련법인에게 기존의 지위를 복원하도록 한다. 기존의 지위란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기 전의 ACT 납부 혹은 소득공제 상태 등을 말한다. 배당법인에 대해 평가된 세액과 납세기간 3개월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액은 수취법인의 단계에서 세액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바) 복수의 선택

복수 법인이 ICTA 제247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① 두 법인이 각 회사의 이해관계 추구를 목적으로 ICTA 제247조를 선택할 경우 두 법인은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된다.
- ② 국세청은 그룹내 3개 이상의 개별 회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국세청은 그룹내 계열사가 ICTA 제247조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으로 선택하기 위한 특정인을 임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모든 그룹 계열사가 동일인을 지명한 경우 선택 통지서(notice of election)상에 하나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각 계열사가 공인된 결의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그룹회사 경감조치(Group Relief)

그룹릴리프란 그룹회사가 「신청회사(Claimant company)」로 되어 그룹내 다른 회사 「이전회사(Surrendering company)」의 당기에 발생한 사업손실 등을 자사의 과세소득과 상쇄하기 위해 이전받는 것을 신청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컨소시엄릴리프도 적용기업만 다를 뿐 이와 유사한 제도이다.

가) 적용기업

그룹릴리프 또는 컨소시엄릴리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 (1) 75% 그룹회사: 일방이 다른 타방의 75% 자회사인 경우 또는 쌍방이 함께 공동모회사의 75% 자회사인 경우로서 영국 거주법인

에게만 적용된다.

- (2) 컨소시엄회사 : 컨소시엄회사(보통주식자본의 75% 이상이 단독 또는 복수의 다른 내국법인에 의하여 보유되고, 또한 지분이 각기 5% 이상인 회사)는 신청회사(Claimant company) 또는 이전회사(Surrendering company)가 되어 다음 중 어느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컨소시엄 릴리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회사는 특정멤버의 75%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컨소시엄 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사업회사
  - 컨소시엄 그룹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90% 자회사인 사업회사
  - 컨소시엄 그룹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지주회사
- 나) 이전대상이 되는 것

(1) 사업손실(trading losses)

이전회사(Surrendering company)의 당기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은 그 손실이 발생한 이전회사의 사업연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신청회사의 사업연도 기간에 관련된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룹 릴리프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당기에 발생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차기연도 이후의 기간에서의 사업손실의 환급분은 그룹 릴리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투자회사의 관리비 중 당기의 총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excess management expenses on an investment company)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의 당기의 관리비 중에서 당기의 총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신청회사」의 상용기간에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공제부족액(소득금액의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부분)의 前期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3) 당기의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s)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

당기의 세무상 감가상각비 중에서 당기의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상 사

용되지 않은 금액은 신청회사의 상응기간에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될 수 없다.

(4) 당기의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

이전회사의 당기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이 당기의 총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신청회사의 상응기간에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공제부족액의 전기로부터의 이월분은 이전되지 않는다.

다) 이전공제의 계산

(1) 이전회사(Surrendering company)에 있어서의 이전한도액

이전대상이 되는 사업손실 등은 이전회사의 당기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한한다. 위의 '나)'의 이전대상이 되는 것 중에 (2) 투자회사의 관리비 (3) 세무상의 감가상각비 및 (4)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에 대해서는 이전회사에서 당기 총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전되지만 (1) 사업손실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이전회사는 그룹 릴리프대상이 되는 사업손실을 자회사 당기 기타 이익과 상쇄하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다. 특정비용(charges on income) 등에 대해서는 당기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여전히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전이 되지만 이 초과액을 계산(사용되지 않은 금액계산)할 때에는 전기부터 이월되어온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신청회사(Claimant Company)에 있어서의 상쇄

신청회사에서의 그룹 릴리프 대상이 되는 소득은 자사의 당기 사업손실이나 이월사업손실을 공제하고 더욱이 당기에 지불된 특정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다.

라) 컨소시엄 릴리프 한도액 계산

컨소시엄회사와 이 멤버간에는 멤버가 신청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회사의 사업손실 중 이 신청회사의 지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도가 된다. 반대로 컨소시엄 멤버가 이전회사가 되어 컨소시엄회사에

개 사업손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회사의 총소득금액에 이 멤버의 지주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이 된다. 이 점이 지주비율에 따른 제한이 없는 그룹 릴리프와 다른 점이다.

이전회사 1사의 사업손실에 대해 여러 회사가 신청회사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전회사는 이전회사 사업연도에 따른 기간을 가진 단일회사로 이전가능한 금액이 된다.

그룹 릴리프에는 이전회사는 당기 사업손실을 자사의 당기 기타 소득과 통산하기 전에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컨소시엄회사의 경우는 당기 사업손실의 기타 소득과 통산이 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한 후의 금액을 지주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컨소시엄 릴리프로서 이전되는 것이 된다. 다만 이 계산도 단순하게 컨소시엄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손실의 당기 기타 소득과의 상쇄는 실제로는 되지 않게 된다.

#### 다. 독일

독일에서는 1969년부터 한 개의 기업을 다른 기업에서 일체화하여 단일기업체(Organschaft)로 과세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특정한 기업이 자본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결과 지배되는 기업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그 지배하는 기업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한 경우 피지배기업의 손익을 지배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2개의 기업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대상기업

KStG(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하면 단일기업체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모회사는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연인 또는 과세면제를 받지 않

고 국내에 관리장소 및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사단 및 재단 또는 인적회사이어야 하고, 자회사는 반드시 국내 거주법인이어야 한다.

- ② 지배·피지배회사는 5년 이상 유효한 결합이익산출계약(pooling agreement)에 합의해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회사법 내에서 유효하며 지배·피지배회사의 모든 손금과 익금은 모기업의 단계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 ③ 피지배 자회사는 지속적<sup>29)</sup>으로 자본적<sup>30)</sup>·조직적<sup>31)</sup>·경제적<sup>32)</sup>으로 지배 모회사와 결합되어야 한다.

## 2) 단일기업체 과세제도의 개요

### 가) 손익양도

단일기업체 과세를 위한 조건을 갖춘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은 과세 목적상 단일한 법인체로서 간주될 수 있다. 즉, 손금과 익금이 지배회사(controlling company; Traeger)에 통합되어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배회사로서의 모기업이 결합이익(pooled profit)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각 계열사의 손실은 그룹 전체적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상계될 수 있다.

- 29) 지속적 결합이란 자회사가 사업연도의 개시 때부터 그 사업연도가 종결될 때까지 일체의 중단이 없이 계속 성립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30) 자본적 결합(Finanzielle Eingliederung)이란 사업연도 개시부터 계속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1) 조직적 결합(organsatorische Eingliederung)은 자회사가 지배계약을 통해서 자회사의 관리를 모회사에 맡기거나 자회사가 주식법 제 319조에서 제 327조까지의 규정들에 따라 하나의 계열기업인 경우 성립한다. 지배계약은 계약에 근거한 조직적 결합이 존재하게 될 자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체결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업연도 종료시점까지 효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32) 경제적 결합이란 피지배 회사의 지배회사에 대한 경제적인 목적상의 종속을 의미한다.

#### 나) 손익양도계약의 형식

피지배기업이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경우에는 손익양도계약은 주식법(AkfG) 제29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익인도계약의 형식을 따라야만 한다. 회사법상의 계약은 피지배기업을 관할하는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시점에서 발효된다(AkfG 제294조 제2항). 지배기업이 피지배기업의 손실을 흡수하는 것은 손익양도계약에서 묵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 동 계약은 피지배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적어도 7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AktG 제293조 제2항).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인의 내규에 의하여 그 이상의 주주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다) 계약범위

법인세법에는 지배기업으로 이전되는 피지배기업의 소득에 대한 정의는 없다. 따라서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출발점은 법인세법 제8조에 정의되어 있는 법인의 과세소득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피지배기업의 어떠한 손실의 환급이나 이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지배기업의 조정 후의 과세소득은 세무상 지배기업으로 귀속되는 소득과 반드시 동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지배기업이 소수주주에 대해 지분한 보상액 만큼만 피지배기업의 과세소득이 된다.

피지배기업이 회수한 비과세 이자 및 지배기업이 자신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없는 기타 세무상 이자는 세무상으로는 피지배기업의 과세소득이 되며 지배기업으로 이전되는 장부상 이익은 아니기 때문에 피지배기업이 이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손익양도계약에 기초한 피지배기업의 손익이전은 관계회사간 회계를 통하여 하게 된다. 즉 피지배기업은 지배기업으로 이전된 이익액을 지배기업회계에서 대변으로 기재하고 이전된 손실액은 지배기업회계에 차변으로 기재한다.

회계분개가 지배기업의 장부상에서 된다. 피지배기업은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피지배기업은 자신의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만

한다. 피지배기업의 이익은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잉여금회계로 이전가능하다. 따라서 지배기업으로의 이익 인도는 되지 않는다 (KStG 제14조 제5호).

이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업이 특별한 리스크를 가지게 되거나 주주에게 누적이익을 전부 배당한다고 한다면 이 리스크가 실현될 때 자금부담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 의해, 이익을 피지배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피지배기업의 자금포지션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잉여금으로의 이전은 지배기업의 레벨에서의 소득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지배기업의 이익을 귀속된 결과에 따른 지배기업의 자기자본 증가액과 피지배기업의 이익을 실제로 지배기업으로 이전된 결과에 따른 지배기업의 배당가능한 이익 증가액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차액은 예를 들면 피지배기업이 이 이익의 일부를 임의적립금회계(KStG 제14조 제15호)에 이전한 경우 혹은 이러한 적립금회계를 이전한 경우에 발생한다.

## 라. 연결납세제도의 국제비교

기업집단을 과세하는 제도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의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VI-1>과 같다.

미국의 경우는 관련기업그룹(affiliated group of corporations)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각 기업별로 개별신고를 하는 대신 연결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납세신고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동일한 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도 모든 회사는 각기 독립된 과세체(separate legal person)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룹의 계열사는 배당금과 부과금 등 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독립법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연결납세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룹회사경감조치(Group Relief)나 컨소시엄경감조치(Consortium Relief)와 같은 특별조치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69년부터 한 개의 기업을 다른 기업에서 일체화하여 단일기업체(Organschaft)로 과세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특정한 기업이 자본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른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결과 지배되는 기업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사실상 그 지배하는 기업의 한 사업부문에 불과한 경우 피지배기업의 손익을 지배 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을 2개의 기업간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VII-1〉 주요국의 기업집단 과세제도의 비교

	미 국	영 국	독 일	
법인·개인이종과세 배제	이종과세 배제를 위한 조정이 없음.	이종과세배제(imputation) : 수취배당의 20/80의 소득가산과 세액공제	이종과세 배제(Anrechnungs-verfahren) : 수취배당의 30/70의 소득가산과 세액공제	
법인 과세	수취배당의 소득에 산방식	지주 20% 미만 (70%공제), 20% 이상 (80%공제), 80% 이상(전액공제)	수취배당 및 그 30/70을 이익에 산입하고, 30/70의금산입액을 세액에서 공제	
	결손의 이월·소급	소급3년, 이월15년	소급2년 (1천만DM까지), 이월무기한	
	법인세율	통상결손	소급1년 (창업결손 3년), 이월무기한	소급2년 (1천만DM까지), 이월무기한
		자본손실	소급3년, 이월5년 (CG와 상계)	소급부적정, 이월무기한(CG과 상계)
기업집단과세방식	기본세율	15%~38%(특정계층소득 39%)	배당분 30%, 유보분 45%·부가세 (본세의 7.5%)	
	부가세율	유보이득세·동족지주세 : 39.6%		
기업집단과세방식	연결납세신고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51% 집단의 배당특례, 75% 집단의 자산이전 특례와 GR제도	기관제도 (Sondervorschriften für die Organschaft)	
	모 회사	내국법인	내국법인	
연결대상회사	지주비율요건	의결권주의 80%, 동시에 시가의 80%이상 소유 (각 단계마다 판정)	(기관주체) 내국법인·거주자기업 (기관회사) 의결권주소유 50% 초과외 내국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등	
	특수연결회사	캐나다·멕시코 소재의 전주소유자회사	기관주체는 국내동기틀 한 외국기업도 가능	
	연결제외회사	외국법인, 생명보험회사 등, 조세회피목적 취 득회사	외국법인, 회사 이외의 법인	

〈표Ⅷ-1〉의 계속

선택조건		미 국	영 국	특 일
적용요건	가입자회사의 선택 가능	해당 전 자회사의 가입필요	임의선택	임의선택
	계속적용의 필요	연결되지 내국세입청 승인 필요	각 자회사의 임의가입	각 자회사의 임의가입
요건	사업연도통일의 필요	필요	규제없음	5년 이상 계속적인 이익각출계약이 요건
	회계기준통일의 필요	불필요(개별회사기준계속)	불필요(CR은 기간按分)	불필요
개별회사손익의 연	집단회사간의 배당	① 수취배당을 개별회사수익에서 제기 ② 연결잔잉여금에서의 수취배당은 자회사주 식장부가액을 감액	① 51%자회사 배당은 적액의분류산입 ② 51%자회사 배당은 ACT불장수	특별한 규정없음 (일반주식과 같음)
	고정자산	매각손익을 이연, 매입자는 거래가격으로 계 상 (불이연처리선택가능)	75%집단내 양도는 원가인도(강제적용)	특별한 규정없음 (시가기준에 의한 거래가격 계산)
집단회사손익의 연	재고자산	위와 같은 (달리기치후입선출범 간이계산)	소유목적계속은 원가인도, 전환은 매도자 세	
	환매과세	양도원가· 매입자의 양도· 감가상각에 대응하여 매도자 감가상각의 소득계상	양도시· 목적전환시에 매입자의 소득산입	
손익	통상사업손익	탈퇴시에 배가소득계상	탈퇴시에 매입소득산입	
	자본이득 자본손실	개별회사 손익을 연결상계, 차액배분	GR에 의해 개별회사 결손에 임의 이진	자회사 이익각출액은 신회사의 소득, 자회사 결손보전액은 신회사의 손금
손익	특수한 손익	개별회사 소득에서 제외하여 연결상계	GR적용 없음 (개별회사의 손익처리)	
		자신기부금(소득의 10%) 등은 연결공제	GR 적용대상 : 사업결손, 자본공제부족액, 투 자회사관리비등	(자회사소수주주에 대한 배당부담액까지는 자 회사 소득으로 과세)

〈표 VII - 1〉의 계속

		미 국	영 국	특 일
개 별 회 사 손 익 의 연 결 계 산	이월·소금 가입시 자회사이월 결손금	연결 base계산	GR이전잔액은 발생회사가 이월 등 처리	자회사는 이월·소금 적용
	탈퇴시 이월결손금	개별신고연도결손은 개별소득에서 공제	GR이전 불적용	계약권자회사 결손금의 보전은 신회사출자 처리
세 액	외국세액공제	개별회사배분액을 개별회사가 공제	각 개별회사 고유의 결손금의 계속	신회사고유외의 결손금으로 처리
	투자세액공제	한도액·공제액을 연결base로 계산	규정없음(각개별회사의 고유처리)	자회사에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모두 신회사 가 적용
	기타	최저한세액도 연결 base계산	규정없음	
기 타	연결세액의 개별회사배분	이익잉여금계산에 관한 개별회사 배분기준	신회사남부 ACT의 자회사이전공제	규정없음
	연결손익과 자산·부채의 조정	자회사 주식투자가액의 수정규정	GR 등 적용 후의 세액은 개별회사가 부담	이전손익 상당액의 신시간제권관계 발생
	기타 계산	납세의무는 개별회사(신회사는 대리인)	특정제3자회사에의 GR이전합정가능	자회사는 합리적 적립금의 설정 가능
집단의 가입·탈퇴의 특칙	기타 관련제도			손익이전 후 소득에 대해 개별회사가 납세의무 이각출계액은 소수주주 보전조항을 두어야 하며, 주주의 3/4의 동의가 필요 (주식법)
기타 관련제도				부가가치세 및 지방영입세에도 있음.

주 : CG: 자본이득, CL: 자본손실, GR: Group relief, ACT: 신금법인세

자료 : 井上久彌, 『企業集團稅制の研究』, 1996.

## 2. 連結納稅制度 導入의 妥當性 檢討

### 가. 連結재무제표와 連結납세제도의 차이

연결재무제표<sup>33)</sup>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기업 집단을 단일한 조직체계로 간주하여 모회사가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즉,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주식투자가, 채권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 개의 기업집단 또는 연결그룹으로서의 납세부담능력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제의 중립성, 세부담의 공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집단으로서의 소득(손익)과 세액의 계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산, 부채의 계산 그 자체에는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예를들면, 연결재무제표에 있어서는 모회사의 투자계정과 자회사의 자본계정의 상계 제거와 그 상계차액의 연결조정세정 상각은 중요한 과제로 되지만, 연결납세제도에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표 Ⅷ-2>에서 보는 바와 같다.

---

33)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관계의 범위에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기업과 기업간의 지배·종속관계로만 한정된다. 반면에 결합재무제표는 기업간은 물론 개인주주와 그 관계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결합재무제표는 30대 그룹에 한정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모두 만들어야 한다.

〈표 Ⅶ-2〉 연결재무제표와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차이점

		연결재무제표	연결납세제도
1	목적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하여 재정 상태, 경영성적 등의 정보를 제공	세제의 중립성, 세부담의 공정성
2	기업집단의 범위	의결권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sup>1)</sup>	의결권의 과반수에서 100%소유 회사까지 각국의 제도에 따라 다양함. 또한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투자와 자본의 소거	필요함	불필요함. 다만 연결납세상의 각종 세무한도액계산시에 자본금액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소수주주 지분 손익	연결순손익에 영향을 미침.	연결법인세액의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산정된 연결법인세액을 모회사시간에 부담조정하는 경우가 있음.
5	채권·채무의 상쇄	원칙적으로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미수담보금 한도액계산시에는 계산하는 경우도 있음).
6	내부미실현 이익의 소거	원칙적으로 실시	원칙적으로 실시하지만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7	이월결손금	단순합계	각종 제한이 있음.

주 : 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이었으나, 1999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음. 2000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은 다른 투자자와 계약 함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종속회사의 주요 의결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등의 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임.

자료 : 靑山監査法人(編) (1998), p. 102

## 나.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연결납세제도란 모·사회사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벨기에, 캐나다,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등 10여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들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에는 연결납세형과 개별손익이전형이 있다. 대표적인 연결납세형이 미국형이며, 대표적인 개별손익이전형으로는 영국형과 독일형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을 포함하는 각국에서 연결재무제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연결납세제도상의 연결과세소득의 산출계산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 이유는 기업집단세제와 연결재무제표제도가 각각 그 목적, 전제, 기능 등의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주식투자자, 채권자 등)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으로서의 납세부담능력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U. S. Master Tax Guide*(1998)에서는 연결납세제도(연결납세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 ① 차후의 과세연도의 영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관련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손실은 이연된다.
- ③ 이연된 관련기업간 내부거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장작업이 증가한다.
- ④ 그룹내의 재고에 있어서의 관련그룹간 이윤은 매년 재고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 ⑤ 어떤 관련 기업측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외국 세액공제를 하지 못할 수가 있다.
- ⑥ 그룹의 연결 누적소득과 이윤이 최소공제액을 초과하면 누적소득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U. S. Master Tax Guide*가 파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 ① 관련기업 중의 어떤 기업의 손실은 다른 기업의 이윤과 상쇄할 수 있다.
- ② 관련기업 중의 어떤 기업의 자본손실은 다른 기업의 자본이득과 상쇄할 수 있다.
- ③ 관련기업간 배분(intercompany distributions)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 ④ 관련기업간 내부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에 있어서 이익의 인식이 이연될 수 있다.
- ⑤ 어떤 기업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세액공제를 그룹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⑥ 과세목적상 그룹의 대리자로 모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은 우리나라의 대상기업에도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거는 기업이 경영전략상 분사화 또는 사업부제 중 어느 하나의 사업형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세제는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적자생존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자본과 인재의 재분배를 행하고 신규분야에 진출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나 책임의 명확화에 의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부문의 분사화나 합병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금지하였던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된 것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영전략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조세법하에서는 지주회사의 활성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그룹내에서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신규분야에의 진출 또는 적자사업부문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모회사의 사업부문을 분사화하여 사업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수년간은 사업회사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행 조세법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사의 적자를 모회사의 흑자와 상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사화를 하는 경우 분사화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모회사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제상의 불이익 때문에 기업이 전략적인 선택으로서의 분사화를 단념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조직형태의 선택에 대하여 세제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주회사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현재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18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연결납세제도는 국제적인 추세라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연결납세제도가 없다는 것이 사업활동의 장으로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우리 경제의 신뢰회복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0년부터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지주회사를 허용한 일본이 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동일한 그룹내에서 사업회사간 및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해서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흑자회사이고 한 회사가 적자회사이며 흑자의 적자의 규모가 비슷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연결납세 전에는 흑자회사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결납세 후에는 어느 회사도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세제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제도의 이용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연결납세대상 기업의 기장작업이 많아진다. 내부거래나 채무액을 그룹 각사간에 명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장작업이 상당히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작업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지주회사가 허용된 상황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그 허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 1) 기본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납세제도는 크게 연결납세형과 개별손익이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제에 보다 가깝고 연결납세의 내용이 간단하고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탈루를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형 개별손익이전형은 제도가 간단하다는 점에서는 우수하다. 즉, 그룹회사 경감조치(group relief)는 당기결손 중 임의의 금액을 임의의 그룹멤버 법인에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간편하다. 그러나 개별손익이전형이 영국에 정착하게 된 배경은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에 의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가 거의 제기되기 때문에 연결납세형·개별손익이전형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법인단계의 과세가 주주단계의 세후배당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손이전에 의한 감소세액분의 상호결제라는 개념이 세부관습으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국형 개별손익이전형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독일형 개별손익이전형도 영국형과 마찬가지로 제도가 간단하다는 점에서는 우수하다. 즉, 독일형 개별손익이전형은 자회사의 순손익을 그대로 지배기업에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자회사손익을 원칙적으로 零(0)으로 만드는 간편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식법에 의한 기업 지배 계약 및 이익자출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의해 포면화되고 있는 사단법인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뒷받침이 없는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내부손익이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다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미국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국이나 독일의 법인세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제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손익이전형을 채택하게 되면 세무당국과 납세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개별손익이전형은 조세회피에 이용되기 쉽기 때문에 그 방지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번잡한 행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결납세형은 개별손익이전형보다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하는 세제로서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손익이연 등을 포괄하여 개별손익이전형보다도 이론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모자회사 또는 그룹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일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보다 가까운 연결납세형이 개별손익이전형보다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의 제도로서는 연결납세형이 더 나은 제도라고 판단된다.

## 2) 구체적 고려사항

### 가) 연결그룹의 범위

#### (1)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연결납세를 할 자회사를 모든 해당 자회사로 강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납세를 할 자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해당 자회사 전부를 강제로 대상화하면 번잡한 실무를 야기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개별법인의 결손금이 다른 법인의 이익과 상쇄되고 상쇄 후의 이익이 연결이익으로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 자회사만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 전부를 강제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외국자회사를 연결납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외국자회사도 연결대상회사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그룹멤버에 속하는 각 법인의 조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모회사 소재지 주권국의 과세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자회사에 대해서까지 모회사 소재국의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세제를 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외국자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소득 배분 또는 과세의 탈루, 중복에 대한 해결은 연결납세제도가 아니라 이전 가격세제, 조세피난처(tax haven) 관련 세제, 외국세액공제제도 등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국제과세의 일반적인 동향이다.

## (2) 지주비율

연결납세의 대상으로 하는 자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 모두 의결권주의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주비율은 <표 Ⅶ-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가 9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미국의 80%, 영국의 75%, 독일의 50%의 순이다.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지주비율이 아주 높았다. 최초에는 '실질적으로 전주식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owned or controlled or substantially all the stock)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기준은 그후 1924년 세입법에서 95% 지주기준으로 명기되었으며, 1954년 세입법에서는 현행의 80% 지주기준으로 확대되었다.

<표 Ⅶ-3> 주요국의 지주비율

	지주비율
미 국	의결권 주식의 80% 이상
영 국	보통주식 자본의 51% 이상(ICTA 제247조의 선택) 보통주식 자본의 75% 이상(group relief의 경우)
독 일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
프랑스	의결권 주식 및 다른 주식의 95% 이상

기업집단을 단일의 조직체계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연결납세제도와 유사한 연결재무제표<sup>34)</sup>의 경우 그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은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이었으나, 1999년 6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2000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은 다른 투자자와 계약 합의에 의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정관이나 계약에 의해 종속회사의 주요 의결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연결재무제표원리와 같이 경영지배라는 관점에서 대체로 50% 초과 지배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기관제도가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연결납세제도는 멤버 회사의 주주의 이익분배액까지 변동을 미치는 것이므로 경제적 일체성의 의미를 경영지배력만이 아니라 법적인 지분청구권까지 포함하여 고려한다면 100% 지주지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는 일반적으로 경영지배력을 가지지 않고 지분청구권자로서만 기능하므로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도 소수주주의 지분청구권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다면 연결납세제도 적용의 지주기준을 조금 완화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최근 스톡옵션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가 부

---

34)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관계의 범위에 있다.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기업과 기업간의 지배·종속관계로만 한정된다. 반면에 결합재무제표는 기업간은 물론 개인주주와 그 관계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까지가 모두 포함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결합재무제표는 30대 그룹에 한정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모두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과 주식회사의 주주요건이 7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주기준을 95% 정도로 한정하여 연결납세그룹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정착한 후에는 순차적으로 종업원 등에 의한 지주제도의 문제나 실질 지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주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나) 계속적용 요건

연결납세를 선택한 그룹에 대해서 연결납세를 계속 의무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연결납세를 계속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그룹은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연결납세를 중단했다가 필요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결납세의 계속 적용을 의무화하고 만일 연결납세의 계속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연결중지승인제도, 프랑스의 5년 이내 탈퇴시 기존 내부보조금과세 유예의 소급과세, 오스트리아의 6년 이내 탈퇴시 내부거래이익과세, 독일의 5년 계약요건 등도 계속적용원리의 제도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다) 회계연도 및 회계방법

연결그룹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납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소득 측정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각 회사의 회계기간이 다르면 동일 연결그룹회사간에 내부거래가 없는 경우, 이익이나 손금의 인식시기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기간으로 소득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기사업의 재무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서 개별법, 평균원가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제조판매할 제품이나 구입상품에 적합한 회계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선택은 자의적이며 사업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회사가 하나의 연결그룹을 구성할 경우에 재

고자산의 평가방법을 통일해야 한다면 매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결 각 회사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 연결조정항목의 범위

연결납세형은 개별과세소득의 합산액을 기초로 하여, 그것에 연결조정을 가하여 연결과세소득을 산출하고, 그것에 대해 산출된 연결세액을 개별법인을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연결과세소득은 연결조정항목이 어떠한 범위에 한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한정 범위에 따라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 ①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순결손의 이월·소급, 내부손익 제거 등에 한정하는 방식 : 이 방식은 개별소득계산을 원칙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룹멤버의 개별과세소득과 개별과세결손을 상계하는 것이고, 내부거래손익이 있는 경우만 연결조정을 하는 것이다.
- ② 연결조정항목을 ①의 항목 외에 소득기준, 자본기준 또는 세액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하는 방식 : 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감안하여 소득기준, 자본기준, 또는 세액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연결조정을 하는 것이다.
- ③ 연결조정항목을 ② 외에 그룹멤버 모두의 거래항목을 단일법인으로 간주하여 조정하는 방식 : 이 방식은 그룹의 단일주체 개념을 철저히 적용하여 모든 거래항목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연결조정을 하는 것이다.

현행 세제 중에서 소득금액이나 자본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정 항목의 손금산입액을 개별계산의 단순합계액으로 해서는 연결납세의 의미가 별로 없다. 따라서 ①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 항목의 손금산입액을 연결베이스로 재계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간편성을 중시하여 ②의 방식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정

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③의 방향으로 정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손처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별베이스로만 공제가 가능하고 연결베이스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연결베이스 적용 전부터 개별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포함된 손실이 적용 후에 실현된 때에는 당해 개별회사의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적사의 연결대상회사가 존재함에 따라 과세소득을 감액한 후 그룹에서 제외되거나 당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중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감액한 결손금 상당의 이익을 계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탈퇴한 당해 회사가 과거 5년간분의 결손금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적자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흑자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이 행해져서 흑자회사의 구주주가 적자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등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모회사 결손금의 연결베이스로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바) 내부이익의 이연

내부거래에는 동일한 연결그룹내의 회사간에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 노동의 제공, 기술라이센스, 자산의 임대, 금전대출 등을 포함한다. 내부이익은 그 거래가 연결그룹내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연결그룹으로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된다. 실제의 이익은 연결그룹 이외의 법인에게 자산이 매각된 시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내부이익의 이연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내부거래가격을 장부가로 하여 그 양도손익을 매수측에 귀속하는 방식이다(장부가 인계방식). 둘째, 내부거래가격을 시가로 하여 그 양도손익

을 매도측에 계상하고 연결소득계산상 이를 이연한 후 매수측이 그 자산을 외부양도할 때 그 양도원가에 대응하는 이연손익을 연결계산상 매도측의 소득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매도측 손익이연방식).

미국의 경우 1966년 연결신고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장부가 인계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Beck Builders사 사건을 계기로 장부가 인계방식은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정자산을 모회사로부터 자회사에게 양도한 후에 당해 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모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과세할 수 있지만 장부가로 양도하는 한 이러한 이익의 포착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66년부터 매도측 손익이연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매도측 손익이연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의 채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사) 납세의무자의 지정

모·자회사를 연결하여 세액이 결정될 때 모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 또는 세액을 안분하여 개별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연결세액의 각사에의 배분방법은 현재 미국에서 여섯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사의 연결소득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여 개별회사가 각기 자기 부담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모회사는 그 대리인으로서 그룹 전체의 세액을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회사가 납세의무를 태만한 경우 벌칙을 모회사에 대하여 부과할 것인지 각 그룹회사에 대하여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모회사와 각 그룹회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아) 연결납세의 허용시기

연결납세제도의 허용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제도가 우리나라

라와 비슷한 일본의 예가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1997년에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으며, 2001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으며, 아직은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일단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도입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없애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III. 要約 및 結論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된 것은 1986년말의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해서였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다양한 폐해가 차례로 노출되면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규제와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금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1997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반세기만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해주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위험을 분산하며, 조직·인사면에서의 마찰을 완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지주회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외국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외국인의 국내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재벌그룹의 회장실, 비서실 또는 기초실의 해체에 따라 그룹 회장의 법적 지위와 계열사간 조정기능을 어느 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순수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주회사와 관련한 과세문제는 지주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과세문제와 지주회사 설립 이후 발생하는 과세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주회사의 설립시 발생하는 과세문제는 일반적인 회사 설립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거의 동일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 반면, 지주회사 설립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자회사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을 하며 자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모회사가 배당을 받으면 그 수취배당금은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또 다시 법인세가 부과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후의 조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설립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1999년 세법개정안은 수취배당공제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수취배당공제방안은 수취배당금을 지주회사의 과세소득 계산시 순금과 마찬가지로 익금에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한도를 쉽게 정할 수 있고 타법인 출자나 치입금 등의 규모에 따라 익금불산입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의 채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는 더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1999년 세법개정안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상당부분 조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지주회사나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익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1999년 세법개정안은 익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80%와 50%로 하고 있으며, 상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50%와 30%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분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실효성이 의문시된

다. 향후 지분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익금불산입의 한도에 관한 문제이다. 1999년 세법개정안은 지주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상장·등록법인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주비율 50% 이상 80% 이하(상장·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를 익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익금불산입의 한도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1997년 말 세법개정에서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익금불산입의 한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나 지주회사의 차입금 등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중에서 익금불산입의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이다. 지주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에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배당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제한하는 현행안보다는 차입금 배수(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 비율)를 정하여 그 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지급이자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배당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사화를 실시하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 전보다 설립 후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회사와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결법위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1) 특정 자회사만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결납세를 할 자회사를 모든 해당 자회사로 강제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외국 자회사는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최근 스톡옵션제도 및 종업원지주제도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과 주식회사의 주주요건이 7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지주기준을 95%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의 계속 적용을 의무화하고 만일 연결납세의 계속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탈퇴한 경우 제재수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납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통일하여야 하며, 회계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회사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결조정항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을 감안하여 소득기준, 자본기준, 또는 세액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이를 기준으로 연결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손금의 처리는 1) 연결납세제도 적용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별베이스로만 공제가능하고 연결베이스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적자의 연결대상회사가 존재함에 따라 과세소득을 감액한 후 그룹에서 제외되거나 당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중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감액한 결손금 상당의 이익을 계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적자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후자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주식교환이 행해져서 후자회사의 구주주가 적자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등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모회사 결손금의 연결베이스로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내부이익의 이연에 있어서는 장부가 인계방식과 매도측 손익이연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매도측 손익이연방식은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의 채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납세의무자는 1) 연결세액의 각사액의 배분에 있어서 각사의 연결소득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개별회사가 각기 자기 부담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또

한 모회사는 그 대리인으로서 그룹 전체의 세액을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모회사가 납세의무를 대만한 경우 벌칙은 모회사와 각 그룹회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덟째, 연결납세의 허용시기는 일본이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2001년 이후로 하여 일본의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상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1996.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 10년』, 1991.
- 김건식, 「주식회사규제의 재검토: 일본에서의 개정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1호(통권 100호), 1996.
- 김건식 · 장지상 · 최도성, 『우리나라 지주회사금지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1997.
- 김진수,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8-14,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일본지주회사의 해체과정과 해금과정」, 『재정포럼』, 1998년 제3권 제7호, 한국조세연구원, 1998. 7.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제도의 도입방안』, 1997.
- \_\_\_\_\_, 『지주회사의 원리와 경영전략』, 1997.
- 박경서 · 김선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 박길준 · 임응기 · 홍복기, 『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7-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 세제실 법인세제과, 『미국세무회계』, 1994.
- 이성봉, 「독일의 기업과세」, 『월간조세』, 1997년 4월호, 5월호, 6월호.
- \_\_\_\_\_, 「영국의 기업과세」, 『월간조세』, 1997년 11월호, 12월호.
- 이철송,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한국경제연구원, 1995.
- 장태평,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고아카데미, 1998.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쟁력과 지주회사』, 1995.
- 최명근, 『법인세법』, 세경사, 1998.

- 최성근,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법적과제」, 『기업구조조정 촉진관련제도의 도입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 1997.
- 한국조세연구소, 『독일의 법인세법』, 1999.
- , 『미국의 법인소득과세제도』, 1997.
- , 『주요국의 법인소득과세제도』, 1987.
- 한국조세연구원, 『미국의 세법-연방세 및 주세』, 1994.
-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6.
- 江頭憲治郎, 「純粹持株會社をめぐる法的諸問題」, 『商事法務』, No. 1426, 1996.
- 吉川 滿, 「純粹持株會社設立に伴う税制上の問題點」, 『商事法務』, No. 1424, 1996.
- トーマツ EC 統合 チーム(編), 『EC 加盟國の税法』, 中央經濟社, 1992.
- 須田徹, 『アメリカの税法』, 中央經濟社, 1991.
- 本間重紀, 「企業集中規制としての株式保有規制」, 『經濟法學會年報』, 1997.
- 奥村 宏, 「日本の持株會社問題」, 『上場協』, 제33호, 1996.
- 井上久彌, 『企業集團税制の研究』, 中央經濟社, 1995.
- 住田孝之, 「連結納稅制度の導入に關する檢討」, 『商事法務』, No. 1428, 1996.
- 中里 實, 「持株會社と課題」, 『持株會社の法的諸問題』, 資本市場研究會, 1995.
- 増井良啓, 「持株會社と租稅法」, 『商事法務』, No. 1428, 1996.
- , 「連結納稅制度の國際的側面」, 『ジュリスト』 No. 1104, 1997.
- 青山監査法人(編), 『總解説 連結納稅制度』, 日本經濟新聞社, 1998.
- 戶善一, 「持株會社と會社分割」, 『商事法務』, No. 1412, 1996.
- Blumberg, Phillip I. and Kurt A. Strasser, *Problems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under State Statutory Law*,

- Little & Brown, 1995.
- Bowen, N. and Jon Golding(ed.), *Tolley's Tax Legislation 1994-95*, Part 1 & Part 2, 1994.
- CCH, *1999 U. S. Master Tax Guide*, 1998.
- , *Internal Revenue Code*, Volume 1 & Volume 2, 1998.
- , *Income Tax Regulation*, Volume 1 & Volume 2, 1996.
- Clive M. Schmitthoff and Frank Wooldridge, *Groups of Companies*, Sweet & Maxwell, 1991.
- Dolan, D. Kevin and Michael F. Walsh, "Use of Holding Companies in International Tax Planning," *Taxes*, Vol. 73, Dec. 1995.
- Eddy Wymeersch, *Groups of Companies in the EEC*, Walter de Gruyter, 1993.
- Kesti, J. and P. S. Andersen(eds.), *European Tax Handbook 1998*, IBFD, 1998.
- Phillip I. Blumberg,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 (General)*, Little Brown, 1989.
- Phillip I. Blumberg and Kurt A. Strasser, *The Law of Corporate Groups-Statutory Law(Specific)*, Little & Brown, 1992.
- Rixon, F. G., "Lifting the Veil between Holding and Subsidiary Companies," *The Law Quarterly Review*, Vol. 102, July 1986.
- Saunders, G., J. Scott and J. M. Watterston, *Corporation Tax 1997-98*, Tolley Publishing Co., 1997.
- Sheffield, Jeffrey T., "Holding Company Formations," *Taxes*, Vol. 64, Dec. 1986.

## 〈附錄〉 日本의 持株會社制度<sup>1)</sup>

일본에서 지주회사가 금지된 것은 세계 제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인 1947년 미군정당국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후 일본의 경제가 자본자유화 및 산업재편성(1960년대), 국제화 및 엔고현상(1980년대), 규제완화 및 버블붕괴(1990년대) 등 중대한 고비를 겪으면서 그 때마다 해결책의 하나로 지주회사의 부활론이 제기되다가 마침내 일본은 1997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다.

### 1. 持株會社의 解體

#### 가. 지주회사의 해체과정

세계 제2차대전 이전의 일본 경제는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의 재벌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그 당시 재벌에 의한 일본의 자본 집중 형태는 지주회사인 재벌본사가 그 하부에 많은 직계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그 직계회사는 다시 많은 사업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하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였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해당하는 재벌본사의 주식은 재벌가족이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었다.

세계 제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전반적인 체제개혁을 주도한 미군정당국은 재벌이야말로 군부·관료와 결탁하여 민주사회의 형성을 방해하고 일본을 전쟁으로까지 몰고 간 주범이라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재벌 해체계획을 단행하였다. 재벌해체의 목적은 소유를 광범위하게 분산시

---

1) 본장은 김진수(1998)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켜 경쟁적 자유기업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미군정당국은 일본의 재벌해체를 위해 회사 해산의 제한 등에 관한 건(칙령 657호), 회사의 증권보유제한 등에 관한 건(칙령 567호), 지주회사정리위원회령(칙령 233호), 재벌동족 지배력 배제법(법률 2호) 등의 제반 조치를 실시하였다.

재벌해체의 첫번째 단계는 재벌 본사인 지주회사(모회사)로부터 자회사와 관계회사들을 분리시켜 각 회사를 독립된 개별기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0대 재벌가족 56명의 소유주식 및 동산·부동산이 처분되었으며 동 재벌가족의 회사임원으로서의 취임·유임이 제한되어 이들의 기업에 대한 자본적·인적 지배력이 단절되었다. 또한 칙령 233조에 의해 1946년 발족한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총 83개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하여 그 산하 회사의 주식을 동 위원회에 양도하도록 한 후 이를 매각 처분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벌의 산하 기업을 재벌 본사의 통제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재벌해체의 두번째 단계는 재벌이 부활하거나 새로이 민간독점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1947년 4월 독점금지법<sup>2)</sup>의 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설립 및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1947년 7월에는 독점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총리 직속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나. 지주회사 해체의 의의

本間重紀(1997)는 지주회사 해체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sup>3)</sup>. 첫째, 정치사적 의의로서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재벌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수행한 주요 추진세력이며 또한 그 경제적 기초

2)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

3) 本間重紀, 「企業集中規制としての株式保有規制」, 『經濟法學會年報』, 1997.

였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해체는 평화, 즉 반과시즘과 반군국주의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사회경제사적 의의로서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의 재벌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것은 또한 일본 특유의 억압적인 계급제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해체는 독점지배에 대한 제약과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적인 현대시민사회의 건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 2. 持株會社에 관한 規制

### 가. 순수지주회사의 금지

1997년 개정전 독점금지법 제9조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함과 동시에 회사(외국회사 포함)는 국내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였다. 독점금지법 제9조에서는 “주식(사원의 지분을 포함함)을 소유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함으로써 다른 기업의 주식소유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만이 금지대상이 되었다. 반면 독자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자회사를 운영 하는 사업지주회사는 금지대상에 속하지 않았다.

### 나. 관련규정

독점금지법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에 의한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9조 이외에도 주식보유의 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둬으로써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간접적으로 규제하였다.

1947년 제정된 독점금지법은 제10조에서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가 다른 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 조문에 의해 사업회사는 사업지주회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회사의 주식보유가 전세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1949년 제1차 개정시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소유만을 금지하였으며, 1953년 제2차 개정시에는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주식소유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회사는 사업지주회사가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또한 독점금지법 제11조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의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 총수의 5%를 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조문은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의 중점이 경제력집중규제에서 경쟁제한규제로 바뀌에 따라 1953년 제2차 개정시 경쟁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타회사주식의 보유한도도 10%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후 기업의 집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타회사주식 보유한도는 다시 5%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독점금지법은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에 대해서도 규제하였다. 제9조의 2 제1항에서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액이 350억엔 이상 또는 순자산액이 1,400억엔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 3. 持株會社の解禁

#### 가. 지주회사의 해금과정

지주회사 해금에 관한 논의는 1967년 구주경제사절단에 의해 작성된 「산업체제 근대화에 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1977년 독

점금지법이 강화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경제동우회 등에 의해 순수지주회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독점 혹은 과점 형성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경쟁제한의 폐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지적되어 지주회사 해금론은 정부측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후 1990년대 들어와서 효율적인 기업재편과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사총괄회사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측의 주장과 수십, 수백조엔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맞물려 지주회사 해금론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면서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1993년 6월 통산성 산업구조심의회 기본문제소위원회는 독점금지정책의 재검토 측면에서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을 주장하였다. 이어 1995년 2월 통산성 산업정책국의 기업법제연구회가 「순수지주회사 규제 및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전면적인 허용을 요구하면서 지주회사 해금론이 본격화되었다.

통산성 내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1995년 3월 행정개혁추진본부의 규제완화추진계획 속에 ‘지주회사금지를 수정하기 위한 검토’를 포함시켜 3년 이내에 결론을 도출하기로 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임무를 맡겼다. 이에 경제력집중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금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 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11월 독점금지법 제4장 개정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켜 6차례에 걸친 관계, 학계 그리고 실업계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을 갖고 같은 해 12월 27일 「지주회사금지제도의 향후방향」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금지제도의 골격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없다

고 판단되는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소위 부분해금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분사총괄회사 : 순수분사화<sup>4)</sup>를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 : 금융기관이 다른 업종에 신규진입하는 방식의 하나로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 벤처캐피탈지주회사 : 벤처캐피탈이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 소규모지주회사 : 총자산 합계가 3천억엔 이하인 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분해금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여 부분해금이 아닌 완전해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199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또다시 한 걸음 물러서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어 1996년 2월에는 자민당이 독점금지법개정문제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켜 해금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를 행하였으나, 연립내각에 참여한 사회당이 지주회사 해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사태가 반전되어 1996년 6월에는 검토를 중단하고 이를 차기 추진과제로 이연시켰다.

1996년 12월 16일 정부가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다음 해 통상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997년 1월 29일부터 여당의 독점금지법협의회에서 지주회사금지제도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월 25일까지

---

4) 순수분사화란 모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는 지주회사가 되어 본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임.

총 11회의 회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민당, 사끼가께, 민사당의 3당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의거하여 1997년 3월 11일에는 순수지주회사의 해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각료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1997년 4월 18일 중의원에서 개정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어 5월 14일에 상공위원회 결의를 거쳐 5월 15일에는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었다.

중의원 통과 후 1997년 5월 30일부터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되었고 6월 10일 상공위원회 결의에서 중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을 제외한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6월 11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6월 18일 정식으로 개정 독점금지법이 공포되었다. 개정 독점금지법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정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7년 12월 9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이를 12월 17일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지주회사 해금의 논리

지주회사 허용문제를 둘러싼 30여년 동안의 논쟁과정에서 지주회사금지의 논거는 첫째, 지주회사의 허용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둘째, 지주회사의 허용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셋째, 지주회사의 허용은 국내시장을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지주회사의 허용은 불건전한 기업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논거에 의해 금지되었던 지주회사의 부활론은 자본자유화 및 산업재편성(1960년대), 국제화 및 엔고현상(1980년대), 규제완화 및 버블붕괴(1990년대) 등 기업활동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된 것이었다. 지주회사는 신규사업의 전략적 전개, 기존사업의 효율화, 그리고 조직구조의 개혁의 촉진에 있어서 경영전략상 유용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

주회사 해금 논리의 핵심이다. 1995년 일본 통산성 산업정책국이 주장한 지주회사 해금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sup>5)</sup>.

첫째, 지주회사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의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지주회사는 원활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주회사는 벤처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 넷째, 지주회사는 국제적 법제도와와의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째, 지주회사는 조직·인사면에서의 바찰을 회피한 기업결합의 한 형태이다. 여섯째, 지주회사는 소비자이익의 증진 및 고용의 확대를 촉진한다.

#### 4. 改正 獨占禁止法の 概要

##### 가. 금지대상 지주회사

개정 독점금지법은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외국회사 포함)는 국내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획일적인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금지에서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완화된 것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지배력의 집중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정 독점금지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자회사주식(사원의 지분 포함)의 취득가액의 합계가 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정의하고, 이때 자회사는 지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이며 간접보유에 의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상당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사업활동의 지배라는 종전의 기준 대신 주식보유비율이라는 형식적인 수치기준을 제시하여 지주회사

5) 通産省 産業政策局(編), 『企業組織の新潮流』, 1995

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감소시켰다.

## 나.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의 의미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5항).

- 지주회사그룹<sup>6)</sup>의 종합적인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클 것.
- 자금과 관계되는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주회사그룹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클 것.
- 상호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있어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을 것.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7월 실무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구체적인 해금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라고 판단되는 다음 3가지 유형에 대해 그 설립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 제1유형 : 지주회사그룹의 총자산 합계가 15조엔을 초과하고 5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에서 각각 총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 제2유형 :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와 금융 또는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채무보증 업무 등) 이외의 사업분야에서 총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일반 사업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

6) 지주회사그룹이란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기타 지주회사가 주식소유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국내의 회사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주식소유에 의하여 지배하는 회사는 지주회사의 지주비율이 간접소유분을 포함하여 25%를 초과하고 또한 제1대주주인 국내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유형 : 상호관련성<sup>7)</sup>이 있는 5개(산업규모가 매우 클 경우 3개) 이상의 주요 사업분야에서 각각 다른 유력한 회사(시장점유율 10% 이상 또는 상위 3위 이내)를 소유하는 경우

#### 다.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법위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두었다.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자산액(국내 회사의 총자산액에 한함)의 합계가 3천 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이들 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6항).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신설에 대하여는 그 설립일부턴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7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보고를 기초로 조사를 행하여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는 지주회사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처분 등과 같은 배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라. 관련규정

지주회사의 해금과 관련하여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제한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규제대상이 되는 대규모회사로부터 지주회사를 제외함(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
- 총액제한이 적용되는 보유주식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을 추가로 제외함.

---

7) 관련성이란 사업분야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및 보완 대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① 공동분사화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당해 회사가 설립시의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1항 5호)
- ② 100% 자회사의 주식(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1항 6호)
- ③ 벤처기업의 주식(공정거래법 제9조의2 제1항 10호)

#### 마. 차후의 조정

독점금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법 시행상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설립 등이 금지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및 지주회사의 사업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 총액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부칙 제5조).

### 5. 連結納稅制度의 導入時期

일본에서 1997년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약하는 세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마침내 1998년에 정부는 1999년부터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전문적·실무적인 검토를 시작하고 2001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상산업성이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다가 세제당국이 이와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일정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이 제도의 시행은 이제 기정 사실화되었다.

일본정부가 서둘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모·사회사간에 각 회사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결납세제도는 OECD 29개 회원국 중에서 18개국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이다. 셋째, 2000년 3월부터는 증권거래소법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업평가가 연결베이스화됨에 따라 납세방식도 연결납세신고로 통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6. 示唆點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67년 지주회사의 해금론이 처음 논의된후 1997년 지주회사가 해금되기까지 거의 30여년 동안 정·관·민의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이 몇 번 뒤바뀌다가 제한적인 허용으로 결론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의 제한적인 허용을 서둘러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외국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외국인의 국내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의 장기자본 유치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환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내외국인간의 차별대우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국내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실은 지주회사의 허용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재벌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릴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만일 해체된 기존의 비서실 또는 기조실의 기능을 지주회사가 단순히 그대로 대체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정부의 의도에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주회사를 허용함에 있어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지주회사라고 판단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그 설립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의 예가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정 독점금지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회사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에서 금지되는 지주회사 제2유형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제1유형이나 제3유형과 유사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재벌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나 계열거래로 인해 시장의 폐쇄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주회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金珍洙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와 IBRD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주회사 설립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다. 정부는 재벌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경제력집중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더 큰 활력을 주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에도 불구하고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서 지주회사와 관련한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주회사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이다.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1999년 세법개정안은 수취배당공제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수취배당공제방안은 이중과세문제를 매우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사업 지주회사나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익금불산입의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80%, 50%)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익금불산입의 한도(90%, 60%)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 문제이다. 지주회사와 자회

사간 순이익과 순손실이 상계처리 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설립 이전에 비해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회사와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 **The Tax system for Holding Company**

Jin Soo Kim

Following the recent economic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had be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holding company for the establishment of a more transparent corporate structure and smooth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sector. OECD and IBRD had also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allow holding company for similar reasons. As the process of conglomerate restructuring picked up its steam, the Korean government, in anticipation of the ease of economic concentration of conglomerates, finally allowed organizing holding company in April 1999.

However, there still exist several impediments to the promotion of holding companies in Korea, including stric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ax related problems. In order to promote holding companies, the following tax problems should be resolved.

First, the doubl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has to be resolved. In order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problem, the 1999 tax reform act adopted dividend-received-deduction method. This method provides a simple way to solve double taxation problem. However, this should be further extended to operating parent company and the corporate which holds stocks of other companies. The current share proportion to be a standard for non-inclusion of gains should be lower and the ceiling for non-inclusion of gains should be higher.

The second problem concerns corporate income tax. Since the net profit and the net loss between holding company and its subsidiary are not offset for tax purpos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often leads to the increase in tax burden.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consolidated tax system should be applied between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ies.

〈著者略歷〉

金 珍 洙

韓國外國語大學校 貿易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經濟學 博士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政策報告書 99-03

持株會社制度와 租稅政策方向

---

---

1999年 12月 28日 印刷

1999年 12月 30日 發行

著 者 金 珍 洙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1318-11610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2186-2114(代), 팩시밀리：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 상 일 인 쇄

印 刷

© 韓國租稅研究院 1999

ISBN 89-8191-161-4

---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